

---

# 2018회계연도 가평군 결산검사의견서

---

수신: 가 평 군 수

2019. 4. 20.

2018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2019년 4월 1일 ~ 4월 20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배 영 식(가평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신 명 철(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장 상 용(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정 진 구(전직 가평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홍 인 수(세무사)

## 가평군결산검사위원

# 결 산 검 사 의 건 서

가평군수 귀하

2019년 4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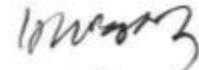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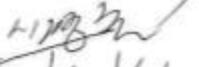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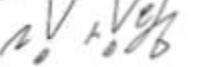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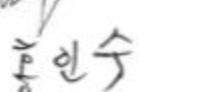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가평군 의회로부터 가평군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20일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가평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가평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가평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서(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배영식	
위원	신명철	
위원	장상용	
위원	정진구	
위원	홍인수	

# 목 차

<b>I .</b>	<b>결산검사 경과</b>	<b>1</b>
------------	----------------	----------

<b>II .</b>	<b>결산검사 총괄현황</b>	<b>2</b>
-------------	------------------	----------

①	가평균 재정여건 .....	2
---	----------------	---

②	세입·세출 결산 .....	5
---	----------------	---

③	기금 결산 .....	17
---	-------------	----

④	재무제표의 결산 .....	18
---	----------------	----

⑤	성과보고서 .....	20
---	-------------	----

⑥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1
---	--------------------	----

<b>III .</b>	<b>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b>	<b>24</b>
--------------	-----------------------	-----------

<b>IV .</b>	<b>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b>	<b>58</b>
-------------	--------------------------------	-----------

# I.

## 결산검사 경과

### 1. 결산검사의 방향

-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작성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 2018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의회승인으로 확정된 세출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금액 내에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결산검사 기간: 2019. 04. 01. ~ 04. 20.(20일간)

### 3.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배 영 식	결산총괄, 결산개요	
위 원	신 명 철	세입결산, 금고의 결산	
위 원	장 상 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위 원	정 진 구	세출결산, 결산서첨부서류	
위 원	홍 인 수	특별회계, 기금결산	

### 4. 결산검사 사항

-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기금결산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결산

### 5. 결산검사 진행

- 세입·세출결산서 위주로 검사
-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원칙으로 제 장부 및 지출증빙서 등을 열람
- 결산검사 중 의문사항은 서류제출 요구
- 쟁점사항은 위원의 협의를 거쳐 조정

## II.

#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가평군 재정여건

###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포함)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세 입	540,750,880	596,722,745	596,534,468	682,929,297	700,171,024
	세 출	370,410,650	422,935,049	392,615,647	462,964,521	494,005,447
	결산상잉여금	170,340,230	173,787,696	203,918,821	219,964,776	206,165,577
일반회계	세 입	407,003,712	445,507,238	455,758,336	528,840,210	559,162,177
	세 출	295,190,169	333,373,475	314,717,846	369,414,872	422,511,551
	결산상잉여금	111,813,543	112,133,763	141,040,490	159,425,338	136,650,626
특별회계	세 입	90,149,939	103,142,199	87,294,937	95,658,857	93,336,797
	세 출	74,098,140	87,213,841	76,213,093	78,179,704	70,595,469
	결산상잉여금	16,051,799	15,928,358	11,081,844	17,479,153	22,741,328
기 금	세 입	43,597,229	48,073,308	53,481,195	58,430,230	47,672,051
	세 출	1,122,341	2,347,733	1,684,708	15,369,945	898,427
	결산상잉여금	42,474,888	45,725,575	51,796,487	43,060,285	46,773,624

- 2018회계연도 재정규모는 700,171,024천원으로 2017회계연도 대비 17,241,727천원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의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6,715천원이다.

※ 가평군의 현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 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간의 내부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이나 전년도 이월금,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 가평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합 계	12,222,500	5,700,000	18,000,000	17,200,000	16,381,250	
일 반 회 계	11,140,000	5,400,000	17,800,000	17,200,000	16,381,250	
공 채	-	-	-	-	-	
차 입 금	11,140,000	5,400,000	17,800,000	17,200,000	16,381,250	
채무부담행위	-	-	-	-	-	
공기업특별회계	1,082,500	300,000	200,000	-	-	

- 가평군 채무는 2015년도 조기상환으로 채무가 감소하였다가 2016년도 「가평뮤직빌리지사업」에 8,000,000천원, 「가평·청평·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5,000,000천원을 차입함으로써 증가되었고,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채무를 주민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채무’는 260천원으로 2017회계연도 보다 6천원이 감소하였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6호)」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주의 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판 단 기 준		가 평 군 지 표
			주 의	심 각(위 기)	
채무관리	① 예산대비 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잔액}}{\text{총예산}}$	25% 초과	40% 초과	2.3%
	② 채무상환 부담률	$\frac{\text{지방채무상환액}}{\text{일반재원}}$	12% 초과	17% 초과	0.3%
세입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 현황	$\frac{\text{해당연도 평균 월별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50% 미만	0% 미만	100.5%
자금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frac{\text{해당연도 평균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 미만	10% 미만	104.4%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채}}{\text{순자산}}$	400% 초과	600% 초과	0.39%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상수도) 0.73% (하수도) 0.04%

- 가평균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3%, 채무상환 부담률은 0.3%, 지방세 징수액 현황은 100.5%, 금고잔액 현황 104.4%, 공기업 부채비율은 0.39%로서 가평균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8년도 본예산 기준)

$$\text{- 재정자립도} = 25.65 \% \left[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지방세: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 ☞ 재정자립도는 동종 자치단체(전국 군 평균 23.42%)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text{- 재정자주도} = 70.34\% \left[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자체수입: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 ☞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동종 자치단체(전국 군 평균 63.15%) 보다 재정자주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즉 총 수입에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19.7%)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변동성이 큰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조금)에 대한 보완책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의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세입·세출 결산

### 1. 총 괄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잉여금(A-B)	비고
합 계	640,085,730	652,498,974	493,107,020	159,391,954	
일반회계	548,786,777	559,162,177	422,511,551	136,650,626	
특별회계	91,298,953	93,336,797	70,595,469	22,741,328	
공기업특별회계	63,241,893	63,934,989	45,889,322	18,045,667	
기타특별회계	28,057,060	29,401,808	24,706,147	4,695,661	

구 분	현연도 채무상환	이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	40,761,178	6,848,205	49,223,064 (434,000)	3,402,482	59,157,025	
일반회계	-	33,258,542	6,203,498	49,136,802 (434,000)	3,122,628	44,929,156	
특별회계	-	7,502,636	644,707	86,262	279,854	14,227,869	
공기업특별회계	-	7,148,745	644,707	-	-	10,252,215	
기타특별회계	-	353,891	-	86,262	279,854	3,975,654	

※ ( )는 자금 없는 이월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52,498,974천원으로 예산현액 640,085,730천원보다 12,413,244천원이 더 수납되었다.

-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5.6%인 493,107,020천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9,391,954천원이다. 이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 40,761,178천원, 사고이월 6,848,205천원, 계속비이월 49,223,06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402,482천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9,157,025천원이다.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현연도 채무상환액은 없다.

- 명시·사고 및 계속비 이월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 1)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 예산현액 640,085,730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2,498,97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이며, 징수결정액 667,694,311천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7%이다.

###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다/가	다/나
합 계	640,085,730	667,694,311	652,498,974	2,182,208	13,013,129	101.9	97.7
전년도	618,246,599	641,380,259	624,499,067	3,675,390	13,205,802	101.0	97.4
일반회계	548,786,777	573,531,230	559,162,177	2,176,406	12,192,647	101.9	97.5
전년도	521,047,099	544,342,870	528,840,210	3,672,076	11,830,584	101.5	97.2
특별회계	91,298,953	94,163,081	93,336,797	5,802	820,482	102.2	99.1
전년도	97,199,500	97,037,389	95,658,857	3,314	1,375,218	98.4	98.6

- 수납액은 전년대비 27,999,907천원(4.5%)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1,493,182천원(40.6%)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92,673천원(1.5%) 감소하였다.

## 2) 세출결산

-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예산액은 520,979,102천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19,106,628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40,085,730천원이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인 493,107,020천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의 15.2%인 97,266,446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인 49,712,264천원이다.

### 【예산현액 대비 세출총괄】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합 계	640,085,730	493,107,020	97,266,446	49,712,264	
전년도	618,246,599	447,594,577	119,106,629	51,545,393	
일반회계	548,786,777	422,511,551	89,032,841	37,242,385	
전년도	521,047,099	369,414,873	107,160,046	44,472,180	
특별회계	91,298,953	70,595,469	8,233,605	12,469,879	
전년도	97,199,500	78,179,704	11,946,583	7,073,213	

## 2. 일반회계

### 1) 세입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입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과 목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결손처분 등)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액)	비중 (수납액 기준 %)
합 계	548,786,777	573,531,230	559,162,177	2,176,406	12,192,647	100
전년도	521,047,099	544,342,870	528,840,210	3,672,076	11,830,584	100
지방세수입	52,400,000	63,650,733	54,786,458	1,128,529	7,735,746	9.8
전년도	56,263,000	66,107,887	57,049,901	2,534,889	6,523,097	10.8
세 외 수 입	20,081,324	26,729,053	21,224,275	1,047,877	4,456,901	3.8
전년도	20,892,235	28,594,341	22,149,667	1,137,187	5,307,487	4.2
지방교부세	142,868,217	144,218,408	144,218,408	-	-	25.8
전년도	132,103,409	132,778,068	132,778,068	-	-	25.1
조정교부금등	52,269,000	58,362,559	58,362,559	-	-	10.4
전년도	43,734,565	51,164,894	51,164,894	-	-	9.7
보 조 금	112,222,899	111,705,469	111,705,469	-	-	20.0
전년도	115,369,874	112,934,727	112,934,727	-	-	21.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8,945,337	168,865,008	168,865,008	-	-	30.2
전년도	152,684,016	152,762,953	152,762,953	-	-	28.9
결산확인액	548,786,777	573,531,230	559,162,177	2,176,406	12,192,647	
차 액	-	-	-	-	-	

- 예산현액은 548,786,777천원으로 전년대비 27,739,678(5.3%)증가하였고, 징수 결정액은 573,531,230천원으로 전년대비 29,188,360천원(5.4%)증가하였다.
-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30,321,967천원 많은 559,162,177천원(5.7%)이 수납 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440,340천원(8.6%), 조정교부금 등 7,197,665천원(14.1%) 등이다.
-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총 수납액 559,162,177천원 중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25.8%, 보조금 20%, 조정교부금 등 10.4%, 지방세수입 9.8%, 세외수입 3.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불납결손액은 2,176,406천원으로 주된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 1,105,930천원(50.8%), 평가액 부족 739,328천원(33.9%), 시효소멸 260,494천원(12%) 등이다.

○ 세목별 세입결산액은 다음과 같다.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48,786,777	573,531,230	559,162,177	2,176,406	12,192,647
지방세	소 계	52,400,000	63,650,733	54,786,458	1,128,529	7,735,746
	주민세	1,150,000	1,271,108	1,193,151	206	77,751
	재산세	21,800,000	24,554,640	22,703,555	2,457	1,848,628
	자동차세	6,800,000	7,643,619	6,807,915	955	834,749
	담배소비세	7,000,000	7,069,547	7,069,547	-	-
	지방소득세	14,800,000	18,405,066	16,427,681	2,961	1,974,424
	지난년도수입	850,000	4,706,753	584,609	1,121,950	3,000,194
세외수입	소 계	20,081,324	26,729,053	21,224,275	1,047,877	4,456,901
	경상적세외수입	11,970,036	12,271,215	12,068,322		202,893
	재산임대수입	471,626	662,710	560,118		102,592
	사용료수입	4,530,181	4,376,343	4,276,586		99,757
	수수료수입	2,275,611	2,454,621	2,454,303		318
	사업수입	502,900	513,047	512,850		197
	징수교부금수입	2,614,803	2,618,252	2,618,252		
	이자수입	1,574,915	1,646,242	1,646,213		29
	임시적세외수입	8,111,288	14,457,838	9,155,953	1,047,877	4,254,008
	재산매각수입	157,300	285,446	285,446		
	부담금	523,300	706,640	574,856		131,784
	과징금및과태료	1,072,857	1,523,831	1,093,305	1,780	428,746
	기타수입	5,957,831	6,705,232	6,566,345		138,887
	지난연도수입	400,000	5,236,689	636,001	1,046,097	3,554,591
지방교부세	142,868,217	144,218,408	144,218,408			
조정교부금 등	52,269,000	58,362,559	58,362,559			
보조금	112,222,899	111,705,469	111,705,469			
국비보조금	72,973,795	72,443,818	72,443,818			
도비보조금	39,249,104	39,261,651	39,261,65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8,945,337	168,865,008	168,865,008			

○ 지난년도 대비 세목별 세입결산액의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목별 세입(수납액)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연도별	2018년	2017년	증감액	증감율 (%)	비고
합	계	559,162,177	528,840,210	30,321,967	5.7	
지 방 세	계	54,786,458	57,049,901	△2,263,443	△4.0	
	주 민 세	1,193,151	1,145,061	48,090	4.2	
	재 산 세	22,703,555	21,795,927	907,628	4.2	
	자 동 차 세	6,807,915	10,021,801	△3,213,886	△32.1	
	담 배 소 비 세	7,069,547	7,333,334	△263,787	△3.6	
	지 방 소 득 세	16,427,681	14,528,972	1,898,709	13.1	
	지 난 년 도 수 입	584,609	2,224,805	△1,640,196	△73.7	
세 외 수 입	계	21,224,275	22,149,667	△925,392	△4.2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2,068,322	12,341,126	△272,804	△2.2	
	임 시 적 세 외 수 입	9,155,953	9,808,541	△652,588	△6.7	
지 방 교 부 세		144,218,408	132,778,068	11,440,340	8.6	
조 정 교 부 금 등		58,362,559	51,164,894	7,197,665	14.1	
보 조 금	계	111,705,469	112,934,727	△1,229,258	△1.1	
	국 비 보 조 금	72,443,818	72,395,985	47,833	0.1	
	도 비 보 조 금	39,261,651	40,538,742	△1,277,091	△3.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68,865,008	152,762,953	16,102,055	10.5	

- 지방세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및 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증가되었고,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세 주행분(운수업체 보조금)이 감액조정 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소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과오납환급액이 전년대비 1,906,836천원 증가한 2,280,232천원이 발생하여 징수액이 감소하였는데 과오납환급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는 납세자의 착오납부 1,014,973천원(44.5%), 납세자 권리구제 710,083(31.1%), 국세환급에 따른 환부 282,725(12.4%) 등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한 결과 77,741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지방세를 현물(토지)로 징수한 것에 대한 차액이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액	차 액	사 유
일 반 회 계	559,162,177	559,084,436	77,741	지방세 현물(토지) 징수 ※ 공유재산 증가

**2) 세출**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출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나/가)	비고
2018년	441,626,731	548,786,777	422,511,551	89,032,841	37,242,385	76.9	
2017년	420,216,106	521,047,099	369,414,873	107,160,046	44,472,180	70.9	
증감액 (%)	21,410,625 (5.1)	27,739,678 (5.3)	53,096,678 (14.4)	△18,127,205 (△16.9)	△7,229,795 (△16.3)		
결산확인액	441,626,731	548,786,777	422,511,551	89,032,841	37,242,385		
차 액	-	-	-	-	-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441,626,731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07,160,04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48,786,777천원이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6.9%인 422,511,551천원이고 89,032,841천원(예산현액 대비 16.2%)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242,385천원(예산현액 대비 6.7%)으로 주로 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전년대비 7,229,796천원(16.3%) 감소하였다.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액	차 액	비고
일 반 회 계	422,511,551	422,511,551	-	

○ 일반회계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이월내역】**

(단위 : 천원, 건, %)

구 분	2018년(A)		2017년(B)		차 액(C=A-B)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증감율
합 계	220	89,032,841	211	107,160,046	9	△18,127,205	△16.9
명 시 이 월	120	33,258,541	117	38,354,131	3	△5,095,590	△13.3
사 고 이 월	28	6,203,498	31	8,091,712	△3	△1,888,214	△23.3
계속비이월	72	49,570,802	63	60,714,203	9	△11,143,401	△18.4

- 총 이월사업비는 220건 89,032,841천원으로 명시이월 120건 33,258,541천원, 사고이월 28건 6,203,498천원, 계속비이월 72건 49,570,802천원으로 전년대비 16.9%가 감소하였다.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지출액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점유율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48,786,777	422,511,551	77.0	100	369,414,873	53,096,678	114.3
일 반 공 공 행 정	41,957,501	36,238,160	86.4	8.6	27,056,327	9,181,833	133.9
공공질서 및 안전	6,080,045	3,969,147	65.3	0.9	3,967,632	1,515	100.0
교 육	9,263,453	8,098,611	87.4	1.9	6,096,639	2,001,972	132.8
문 화 및 관 광	72,620,902	45,391,282	62.5	10.7	35,409,661	9,981,621	128.2
환 경 보 호	33,215,057	29,993,515	90.3	7.1	24,487,243	5,506,272	122.5
사 회 복 지	111,036,924	101,326,241	91.3	24.0	95,486,287	5,839,954	106.1
보 건	6,545,283	6,068,663	92.7	1.4	4,726,610	1,342,053	128.4
농 립 해 양 수 산	50,455,354	38,834,388	77.0	9.2	39,810,790	△976,402	97.5
산 업 · 중 소 기 업	14,430,798	8,349,951	57.9	2.0	6,792,798	1,557,153	122.9
수 송 및 교 통	37,748,993	23,789,157	63.0	5.6	20,756,018	3,033,139	114.6
국 토 및 지 역 개 발	96,221,235	68,432,573	71.1	16.2	56,060,546	12,372,027	122.0
예 비 비	14,407,815	-	-	-	-	-	-
기 타	54,803,417	52,019,863	94.9	12.3	48,764,322	3,255,541	94.9

-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 101,326,241천원(24%), 국토및지역개발 68,432,573천원(16.2%), 문화및관광 45,391,282천원(10.7%) 등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133.9%), 교육(132.8%), 보건(128.4%), 문화및관광(128.2%) 등이다.

### 3.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결산

#### 1) 세입

-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입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입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합	계	91,298,953	94,163,081	93,336,797	5,802	820,482
	전 년 도	97,199,500	97,037,389	95,658,857	3,314	1,375,218
공	소 계 (2)	63,241,893	64,416,626	63,934,989	5,802	475,835
	전 년 도	55,871,171	56,369,416	55,333,998	3,314	1,032,104
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850,426	24,966,298	24,708,788	4,832	252,678
	전 년 도	15,020,279	15,335,677	14,501,839	1,370	832,468
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391,467	39,450,328	39,226,201	970	223,157
	전 년 도	40,850,892	41,033,739	40,832,159	1,944	199,636
기	소 계 (6)	28,057,060	29,746,455	29,401,808	-	344,647
	전 년 도	41,328,328	40,667,973	40,324,858	-	343,115
의	료 기 금	1,000,341	1,006,065	1,006,065	-	-
	전 년 도	948,625	951,039	951,039	-	-
발	전 소 주 변 지 역	1,123,221	1,094,545	1,094,545	-	-
	전 년 도	953,127	950,723	950,723	-	-
공	영 개 발	1,740,679	1,749,900	1,749,900	-	-
	전 년 도	1,747,225	1,742,155	1,742,155	-	-
주	차 장	304,275	630,259	285,612	-	344,647
	전 년 도	321,565	647,552	304,438	-	343,114
수	질 개 선	23,588,544	24,968,550	24,968,550	-	-
	전 년 도	36,853,674	35,871,968	35,871,968	-	-
장	기 미 집행 대 지 보 상	300,000	297,136	297,136	-	-
	전 년 도	504,112	504,535	504,535	-	-
결 산 확 인 액		91,298,953	94,163,081	93,336,797	5,802	820,482
차 액		-	-	-	-	-

-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로인 93,336,797천원으로 전년대비 2,322,060천원(2.45%)이 감소하였다.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554,736천원(40.3%)가 감소한 820,482천원으로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상·하수도요금, 불법주정차과태료의 미수납액으로 납세자의 납세태만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과 금고출납계산서를 대사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액 2,234,556천원이 발생하였다.
- 그 원인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출납사무 완결기한(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서 당해연도 12월에 수납되어 가평균 금고에 미입금된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차액이 각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55,076천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5,480천원이 발생하였다.
  -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2018년 국비보조금 1,424,000천원을 2018회계연도 내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금고로 이체하여야 하나, 별도 보조금계좌에 보관하고 다음연도인 2019년 1월 25일에 이체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액	차액	사유
합	계	93,336,797	91,102,241	2,234,556	
	공기업특별회계	63,934,989	61,700,433	2,234,556	
	상수도사업	24,708,788	22,829,712	1,879,076	· 타 금융기관 수납세입 2018년 회계마감 후 금고 입금액: 455,076천원 · 보조금계좌 보관 금고 미입금 보조금: 1,424,000천원
	하수도사업	39,226,201	38,870,721	355,480	· 타 금융기관 수납세입 2018년 회계마감 후 금고 입금액: 355,480천원
	기타특별회계	29,401,808	29,401,808	-	

## 2) 세출

-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합	계	91,298,953	70,595,469	8,233,605	12,469,879
	전 년 도	97,199,500	78,179,704	11,946,583	7,073,213
공	소 계 (2)	63,241,893	45,889,322	7,793,452	9,559,119
	전 년 도	55,871,172	45,803,141	6,911,376	3,156,655
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850,426	13,393,958	5,154,897	6,301,571
	전 년 도	15,020,280	9,410,357	3,739,947	1,869,976
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391,467	32,495,364	2,638,555	3,257,548
	전 년 도	40,850,892	36,392,784	3,171,429	1,286,679
기	소 계 (6)	28,057,060	24,706,147	440,153	2,910,760
	전 년 도	41,328,328	32,376,563	5,035,207	3,916,558
의	료 기 금	1,000,341	984,115	-	16,226
	전 년 도	948,625	879,065	-	69,56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1,123,221	541,393	-	581,828
	전 년 도	953,127	496,221	-	456,906
공	영 개 발	1,740,679	-	-	1,740,679
	전 년 도	1,747,225	30,476	-	1,716,749
주	차 장	304,275	220,816	-	83,459
	전 년 도	321,565	232,517	-	89,048
타	수 질 개 선	23,588,544	22,669,784	440,153	478,607
	전 년 도	36,853,674	30,251,034	5,035,207	1,567,433
장	기 미 집행 대 지 보 상	300,000	290,039	-	9,961
	전 년 도	504,112	487,250	-	16,862
결 산 확 인 액		91,298,953	70,595,469	8,233,605	12,469,879
차 액		-	-	-	-

- 2018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1,298,953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7.3%인 70,595,469천원이 지출되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5,889,322천원(예산현액 대비 72.6%)을 지출하였고, 7,793,452천원(예산현액 대비 12.3%)은 이월하였으며, 9,559,119 천원(예산현액 대비 20.5%)을 불용하였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4,706,147천원(예산현액대비 88.1%)을 지출하였고, 440,153천원(예산현액 대비 1.6%)은 이월하였으며, 2,910,760천원(예산현액 대비 10.4%)을 불용하였다.

- 기타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당시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잔액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하였으나, 별도의 조례나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가평군 도시공사 설립 계획’ 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사업의 추진사업이 전무하다면 특별회계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막대한 예산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다.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액	차 액	비 고
특 별 회 계	70,595,469	70,595,469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5,889,322	45,889,322	-	
기 타 특 별 회 계	24,706,147	24,706,147	-	

○ 특별회계의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이월내역】**

(단위 : 천원, 건, %)

구 분	2018년(A)		2017년(B)		차 액(C=A-B)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증감율
합 계	12	8,233,605	17	11,946,582	△5	△3,712,977	△31.1
명 시 이 월	7	7,502,636	8	7,165,419	△1	337,217	4.7
사 고 이 월	3	644,707	5	415,731	△2	228,976	55.1
계속비이월	2	86,262	4	4,365,432	△2	△4,279,170	△98.0

- 총 이월사업비는 12건 8,233,605천원으로 명시이월 7건 7,502,636천원, 사고이월 3건 644,707천원, 계속비이월 2건 86,262천원으로 전년대비 31.1%가 감소하였다.

**4. 예비비의 결산**

○ 2018회계연도 예비비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일반회계)		207,680	117,503	450	89,727
세 정 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18,127	16,676	-	1,451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14,473	13,604	-	869
건 설 과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106,398	22,144	-	84,254
농업정책과	농 가 소 득 배 가 육 성	38,622	35,469	-	3,153
산 립 과	임 산 물 유통 지원	30,060	29,610	450	-

-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개사업 5건 207,680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 예측 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

### 3 기금의 결산

○ 2018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성액 (A+B)
		증감액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3,060,285	3,713,338	4,611,765	898,427	46,773,623
통합관리기금	20,442,256	1,674,663	2,015,289	340,626	22,116,919
지방채상환기금	991,334	15,503	15,503	-	1,006,837
사회복지기금	6,933,236	78,959	156,565	77,606	7,012,195
문화예술발전기금	1,560,573	25,689	25,689	-	1,586,262
식품진흥기금	170,172	18,967	60,474	41,507	189,139
체육진흥기금	1,058,505	-	18,000	18,000	1,058,505
장학기금	8,886,253	1,280,227	1,517,123	236,896	10,166,480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49,826	66,804	117,690	50,886	216,630
재난관리기금	1,524,863	340,580	460,486	119,906	1,865,443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022,768	4,378	17,378	13,000	1,027,146
옥외광고정비기금	320,499	207,568	207,568	-	528,067

- 2018회계연도 말 가평균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43,060,285천원에 해당연도 조성액 4,611,765천원을 더하고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 898,427천원을 공제한 46,773,623천원이다.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36,788,824	42,474,888	45,725,575	51,796,487	43,060,285	4.0
해당연도 조성액	6,808,405	5,598,420	7,755,620	6,633,743	4,611,765	△9.3
해당연도 사용액	1,122,341	2,347,733	1,684,708	15,369,945	898,427	△5.4
해당연도말 조성액	42,474,888	45,725,575	51,796,487	43,060,285	46,773,623	2.4

#### 4 재무제표의 결산

○ 가평군의 2018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b>자 산</b>	<b>1,996,858</b>	<b>1,908,984</b>	<b>87,874</b>	<b>4.6</b>
I. 유 동 자 산	183,581	185,804	△2,223	△1.2
II. 투 자 자 산	5,880	22,573	△16,693	△73.9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13,973	113,480	493	0.4
IV. 주 민 편 의 시 설	351,959	302,077	49,882	16.5
V. 사 회 기 반 시 설	1,339,415	1,282,773	56,642	4.4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050	2,277	227	9.9
<b>부 채</b>	<b>27,846</b>	<b>31,885</b>	<b>△4,039</b>	<b>△12.6</b>
I. 유 동 부 채	8,911	11,284	△2,373	△21.0
II. 장 기 차 입 부 채	15,156	16,381	△1,225	△7.5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3,779	4,220	△441	△10.4
<b>순 자 산</b>	<b>1,969,012</b>	<b>1,877,099</b>	<b>91,913</b>	<b>4.9</b>
I. 고 정 순 자 산	1,790,816	1,683,222	107,594	6.4
II. 특 정 순 자 산	24,590	22,602	1,988	8.8
III. 일 반 순 자 산	153,606	171,275	△17,669	△10.3

- 2018회계연도 말 가평군의 자산은 1조 9,968억 원으로 전년도의 1조 9,089억 원보다 878억 원(4.6%) 증가하였다.

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10억 원 증가하는 등 일반유형자산 5억 원(0.4%), 주민편의시설 499억 원(14.2%), 사회 기반시설 566억 원(4%)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는 27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원(12.7%)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가 24억 원(21.0%), 장기차입부채 12억 원(7.5%), 기타비유동부채 4억 원(10.5%)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2018회계연도 말 가평군의 순자산은 전년도의 1조 8,771억 원보다 919억 원(4.9%) 증가한 1조 9,690억 원이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나)	150,999	117,759	33,240	28.2
가. 사업총원가	278,038	265,838	12,200	4.6
나. 사업수익	127,039	148,079	△21,040	△14.2
II. 관리운영비	57,285	55,028	2,257	4.1
III. 비배분비용	16,143	18,371	△2,228	△12.1
IV. 비배분수익	16,526	12,143	4,383	36.1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07,901	179,015	28,886	16.1
VI. 일반수익	284,600	262,506	22,094	8.4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76,699	△83,491	6,792	8.1

- 가평균의 2018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2,780억 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270억 원을 차감한 1,509억 원이며, 총 11분야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분야는 “환경보호” (339억 원), “사회복지” (308억 원), “일반공공행정” (294억 원)이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53억 원과 경비 19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0.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이자비용) 3억 원, 기타비용(자산처분손실,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등) 15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165억 원, 기타수익(전입금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기타비배분수익 등) 72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8회계연도 가평균의 재정운영결과는 △767억 원으로 전년도의 △835억 원보다 68억 원(8.1%)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배분수익과 사업순원가가 각각 44억 원(36.1%), 332억 원(28.2%) 증가한 반면, 사업수익과 비배분비용이 각각 210억 원(△14.2%), 223억 원(△12.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5 성과보고서

- 가평군은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 에 ‘비전-전략목표(25개)-정책사업목표(66개)’ 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25	66	149	7	114	28	81.2
기획감사담당관	1	3	10	-	8	2	80.0
자치행정과	1	3	4	-	4	-	100.0
회계과	1	-	-	-	-	-	-
일자리경제과	1	1	1	-	1	-	100.0
민원지적과	1	2	4	1	1	2	50.0
복지정책과	1	3	3	-	3	-	100.0
행복돌봄과	1	4	8	-	7	1	87.5
세정과	1	1	4	-	3	1	75.0
문화체육과	1	4	8	-	8	-	100.0
관광과	1	2	4	1	3	-	100.0
건설과	1	3	7	-	2	5	28.5
안전재난과	1	3	5	-	5	-	100.0
환경과	1	6	9	-	5	4	55.5
농업정책과	1	5	19	-	18	1	94.7
산림과	1	1	1	-	1	-	100.0
도시과	1	1	1	1	-	-	100.0
교통과	1	1	5	-	3	2	60.0
허가민원과	1	5	10	-	9	1	90.0
의회사무과	1	1	2	-	2	-	100.0
보건소	1	5	15	2	8	5	66.6
기술기획과	1	3	6	2	4	-	100.0
소득개발과	1	3	9	-	9	-	100.0
상수도사업소	1	1	1	-	1	-	100.0
하수도사업소	1	1	3	-	2	1	66.6
평생교육사업소	1	4	10	-	7	3	70.0

-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81.2%로 전년도 73.7%보다 7.5%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 다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사업 목표와 관계없는 성과지표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이 단순 투입량(△△개최건수, △△발급통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정책사업목표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 측정산식을 도입이 필요하며, 연초 성과계획 수립 시 전 부서의 지표를 1개 이상 목표로 설정하여 지표가 누락되는 부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⑥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 권

○ 2018회계연도 채권현황은 다음과 같다.

####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발생액	해당연도 상환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합 계	3,921,926	403,744	275,373	4,050,297
일 반 회 계	3,268,126	5,000	-	3,273,12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210	-	-	1,210
상 수 도 사 업	1,210	-	-	1,210
하 수 도 사 업	-	-	-	-
기 타 특 별 회 계	394,700	320,197	169,000	545,897
의 료 급 여 기 금	-	-	-	-
주 택 사 업	-	-	-	-
새 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94,700	320,197	169,000	545,897
공 영 개 발 사 업	-	-	-	-
주 차 장	-	-	-	-
수 질 개 선	-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	-	-	-
기 금	257,890	78,547	106,373	230,064
통 합 관 리 기 금	-	-	-	-
지 방 채 상 환 기 금	-	-	-	-
사 회 복 지 기 금	257,890	78,547	106,373	230,064
문 화 예 술 발 전 기 금	-	-	-	-
식 품 진 흥 기 금	-	-	-	-
체 육 진 흥 기 금	-	-	-	-
장 학 기 금	-	-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	-	-
재 난 관 리 기 금	-	-	-	-
농 업 인 단 체 육 성 기 금	-	-	-	-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	-	-	-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50,297천원으로 일반회계 3,273,126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210천원, 기타특별회계 545,897천원, 기금 230,064천원이다.

## 2. 채무

○ 2018회계연도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 【채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합계	17,200,000	-	818,750	-	16,381,250
일반회계	17,200,000	-	818,750	-	16,381,250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	-	-	-	-	-

- 채무는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고 있으며, 해당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818,750천원이 감소한 16,381,250천원이다.

###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천원)

구분	채무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전년도이월액 기준	16,381,250	1,225,000	2,825,000	2,825,000	2,825,000	3,856,250

- 사업별 해당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다음과 같다.
  - 지방교부세 감액보전(2009.10.16./ 6,000백만원): 3,600,000천원
  - 가평뮤직빌리지조성(2016.06.30./ 5,000백만원): 5,000,000천원
  - 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2016.09.20./ 2,000백만원): 1,875,000천원
  - 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2016.10.26./ 1,000백만원): 968,750천원
  - 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2016.10.26./ 2,000백만원): 1,937,500천원
  - 가평뮤직빌리지조성(2016.12.30./ 3,000백만원): 3,000,000천원

### 3. 공유재산

○ 2018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304,534,326	75,881,911	1,754,958	1,378,661,279	
행정 재산	소 계	1,289,954,641	75,881,620	1,194,640	1,364,641,621
	공 용 재 산	227,790,126	20,219,463	1,074,447	246,935,142
	공 공 용 재 산	1,036,347,533	55,662,157	89,673	1,091,920,017
	기 업 용 재 산	24,409,091	-	-	24,409,091
	보 존 용 재 산	1,407,891	-	30,520	1,377,371
일 반 재 산	14,579,685	291	560,318	14,019,658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74,126,953천원이 증가한 1,378,661,279천원으로, 주요 증가된 내역은 토지 405억 원(670건), 건물 138억 원(11건), 공작물 212억 원(107건), 선박 1억 원(2건) 등이다.

### 4. 물품

○ 2018회계연도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건)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263	170	27	406
금 액	5,154,056	1,571,411	122,898	6,602,569

- 물품은 전년도대비 1,448,513천원이 증가한 6,602,569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차량 27대 11억 원,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및 기타장비 143대 4억 원 등의 신규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	검사위원	배영식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공통
제 목	연례·반복적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업 조치 소홀				

### 개선 및 권고사항

#### □ 최근 2년간 반복적 30%이상 예산잔액 발생사업 현황

(단위: 원)

부 서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내역	비고
기획감사담당관 외 15개 부서	2,173,854,106	865,517,080	1,308,337,026	“불임 내역 참조”	

#### □ 문 제 점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바, 예산의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축소, 중지 등의 사유로 계획되었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최근 2년간 동일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률이 30%이상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걱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매년 연례·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 정책 및 평가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군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평가 및 심사분석과 피드백을 통하여 주요사업들에 대한 정상추진 또는 부진 여부의 정확한 진단을 실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임

□ 붙임

○ 최근 2년간 반복적 30%이상 예산잔액 발생사업

(단위: 원)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잔액발생률 (%)
		계			2,173,854,106	865,517,080	1,308,337,026	
1	2017	기 획 감 사 실	제안제도 운영	303-01 포상금	5,000,000	1,560,000	3,440,000	69
	2018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제도 운영	303-01 포상금	2,500,000	-	2,500,000	100
2	2017	기 획 감 사 실	청렴역량강화	201-02 공공운영비	720,000	35,680	684,320	95
	2018	기획감사담당관	청렴역량강화	201-02 공공운영비	200,000	51,890	148,110	74
3	2017	자 치 행 정 과	후생복지 시책지원	202-04 국제화여비	170,000,000	93,628,910	76,371,090	45
	2018	자 치 행 정 과	후생복지 시책지원	202-04 국제화여비	50,000,000	13,158,030	36,841,970	74
4	2017	경 제 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50,000,000	18,944,560	131,055,440	87
	2018	일 자 리 경 제 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8,000,000	-	8,000,000	100
5	2017	경 제 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57,000	-	857,000	100
	2018	일 자 리 경 제 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	-	2,000,000	100
6	2017	민 원 봉 사 과	지적재조사사업(보조)	201-01 사무관리비	137,667,000	55,726,000	81,941,000	60
	2018	민 원 지 적 과	지적재조사사업(보조)	201-01 사무관리비	171,112,000	83,886,000	87,226,000	51
7	2017	민 원 봉 사 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1-02 공공운영비	900,000	315,790	584,210	65
	2018	민 원 지 적 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1-02 공공운영비	635,000	429,200	205,800	32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잔액발생률 (%)
8	2017	민 원 봉 사 과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201-02 공공운영비	600,000	6,000	594,000	99
	2018	민 원 지 적 과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00	-	300,000	100
9	2017	민 원 봉 사 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01-01 시설비	1,200,000	-	1,200,000	100
	2018	민 원 지 적 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01-01 시설비	1,200,000	-	1,200,000	100
10	2017	희 망 복 지 실	재해구호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00,000	-	3,000,000	100
	2018	복 지 정 책 과	재해구호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00,000	-	3,000,000	100
11	2017	건 설 교 통 과	자전거도로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0	20,109,470	9,890,530	33
	2018	건 설 과	자전거도로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0,000	20,237,600	9,762,400	33
12	2017	안 전 재 난 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9,950,000	6,943,020	3,006,980	30
	2018	안 전 재 난 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950,000	3,734,800	3,215,200	46
13	2017	안 전 재 난 과	민방위시설장비	201-02 공공운영비	47,600,000	32,270,340	15,329,660	32
	2018	안 전 재 난 과	민방위시설장비	201-02 공공운영비	47,600,000	32,116,630	15,483,370	33
14	2017	안 전 재 난 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800,000	6,149,500	4,650,500	43
	2018	안 전 재 난 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2,550,000	5,988,500	6,561,500	52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잔액발생률 (%)
15	2017	안 전 재 난 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4,120,000	26,751,630	27,368,370	51
	2018	안 전 재 난 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201-02 공공운영비	74,120,000	23,942,790	50,177,210	68
16	2017	안 전 재 난 과	풍수해 보험 지원	307-06 보험금	9,032,000	1,671,700	7,360,300	81
	2018	안 전 재 난 과	풍수해 보험 지원	307-06 보험금	8,000,000	2,029,700	5,970,300	75
17	2017	안 전 재 난 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0,000	600,000	9,400,000	94
	2018	안 전 재 난 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8,500,000	154,750	8,345,250	98
18	2017	환 경 과	청소관리	401-01 시설비	20,000,000	11,713,000	8,287,000	41
	2018	환 경 과	청소관리	401-01 시설비	15,000,000	9,600,000	5,400,000	36
19	2017	환 경 과	수질오염총량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0	1,042,300	957,700	48
	2018	환 경 과	수질오염총량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	158,000	342,000	68
20	2017	환 경 과	나눔장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3,800,000	1,961,570	1,838,430	48
	2018	환 경 과	나눔장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640,000	1,801,760	2,838,240	61
21	2017	환 경 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01-11 기타보상금	500,000	250,000	250,000	50
	2018	환 경 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01-11 기타보상금	1,000,000	250,000	750,000	75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잔액발생률 (%)
22	2017	환 경 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301-11 기타보상금	1,500,000	650,000	850,000	57
	2018	환 경 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301-11 기타보상금	900,000	270,000	630,000	70
23	2017	농 업 정 책 과	농산물직거래추진	201-03 행사운영비	20,000,000	10,450,000	9,550,000	48
	2018	농 업 정 책 과	농산물직거래추진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	3,500,000	6,500,000	65
24	2017	농 업 정 책 과	농업경영인육성	201-01 사무관리비	6,500,000	3,110,000	3,390,000	52
	2018	농 업 정 책 과	농업경영인육성	201-01 사무관리비	9,500,000	5,962,000	3,538,000	37
25	2017	농 업 정 책 과	친환경 농업인 육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800,000	2,280,000	2,520,000	53
	2018	농 업 정 책 과	친환경 농업인 육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0,000	1,776,000	1,224,000	41
26	2017	농 업 정 책 과	공동브랜드홍보	201-03 행사운영비	30,000,000	10,940,000	19,060,000	64
	2018	농 업 정 책 과	공동브랜드홍보	201-03 행사운영비	30,000,000	1,980,000	28,020,000	93
27	2017	농 업 정 책 과	국유재산 사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1,779,800	8,220,200	82
	2018	농 업 정 책 과	국유재산 사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	4,340,600	5,659,400	57
28	2017	농 업 정 책 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201-01 사무관리비	490,000	-	490,000	100
	2018	농 업 정 책 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201-01 사무관리비	2,520,000	-	2,520,000	100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잔액발생률 (%)
29	2017	농 업 정 책 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202-01 국내여비	13,040,000	-	13,040,000	100
	2018	농 업 정 책 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202-01 국내여비	5,512,000	-	5,512,000	100
30	2017	농 업 정 책 과	저수지 준설	401-01 시설비	30,000,000	-	30,000,000	100
	2018	농 업 정 책 과	저수지 준설	401-01 시설비	30,000,000	-	30,000,000	100
31	2017	농 업 정 책 과	공동브랜드육성지원및명품화	201-01 사무관리비	1,120,000	-	1,120,000	100
	2018	농 업 정 책 과	공동브랜드육성지원및명품화	201-01 사무관리비	1,120,000	-	1,120,000	100
32	2017	산 림 과	산불방지대책(군비)	201-02 공공운영비	9,065,000	5,521,700	3,543,300	39
	2018	산 림 과	산불방지대책(군비)	201-02 공공운영비	31,080,000	21,046,950	10,033,050	32
33	2017	산 림 과	아름다운나무 관리사업	401-01 시설비	9,000,000	5,385,000	3,615,000	40
	2018	산 림 과	아름다운나무 관리사업	401-01 시설비	15,000,000	5,915,000	9,085,000	61
34	2017	산 림 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401-03 시설부대비	27,118,848	14,191,590	12,927,258	48
	2018	산 림 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401-03 시설부대비	12,927,258	5,980,420	6,946,838	54
35	2017	산 림 과	일반병해충 방제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820,000	1,180,000	59
	2018	산 림 과	일반병해충 방제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300,000	1,700,000	85
36	2017	산 림 과	보호수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000,000	360,000	640,000	64
	2018	산 림 과	보호수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000,000	320,000	680,000	68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잔액발생률 (%)
37	2017	산 림 과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01-02 공공운영비	15,200,000	5,280,000	9,920,000	65
	2018	산 림 과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01-02 공공운영비	15,200,000	8,031,000	7,169,000	47
38	2017	산 림 과	숲길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520,000	1,480,000	74
	2018	산 림 과	숲길 관리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	600,000	1,400,000	70
39	2017	산 림 과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40,000,000	9,632,000	30,368,000	76
	2018	산 림 과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35,000,000	132,615,290	102,384,710	44
40	2017	산 림 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412,000	-	10,412,000	100
	2018	산 림 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80,000	2,079,000	1,001,000	33
41	2017	산 림 과	산림 수해복구	206-01 재료비	5,000,000	-	5,000,000	100
	2018	산 림 과	산림 수해복구	206-01 재료비	3,000,000	1,997,000	1,003,000	33
42	2017	허 가 민 원 과	식품안전사고 예방	301-11 기타보상금	5,000,000	-	5,000,000	100
	2018	허 가 민 원 과	식품안전사고 예방	301-11 기타보상금	3,000,000	-	3,000,000	100
43	2017	보 건 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00,000	960,500	439,500	31
	2018	보 건 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60,000	1,747,280	3,312,720	65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잔액발생률 (%)
44	2017	보 건 소	B형주산기감염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740,000	1,160,520	579,480	33
	2018	보 건 소	B형주산기감염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632,000	747,820	884,180	54
45	2017	보 건 소	국가결핵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48,661,000	25,618,070	23,042,930	47
	2018	보 건 소	국가결핵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19,633,000	8,748,120	10,884,880	55
46	2017	보 건 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401-02 감리비	16,000,000	-	16,000,000	100
	2018	보 건 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자체)	401-02 감리비	16,000,000	5,516,160	10,483,840	66
47	2017	보 건 소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500,000	-	500,000	100
	2018	보 건 소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187,000	-	187,000	100
48	2017	기 술 기 획 과	가평농업전문인력육성	301-11 기타보상금	3,000,000	500,000	2,500,000	83
	2018	기 술 기 획 과	가평농업전문인력육성	301-11 기타보상금	1,500,000	900,000	600,000	40
49	2017	소 득 개 발 과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	406-01 기타자본이전	5,000,000	2,460,440	2,539,560	51
	2018	소 득 개 발 과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	406-01 기타자본이전	5,000,000	2,198,360	2,801,640	56
50	2017	하 수 도 사 업 소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	207-01 연구용역비	30,000,000	-	30,000,000	100
	2018	하 수 도 사 업 소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관리	207-01 연구용역비	30,000,000	18,800,000	11,200,000	37

연번	회계연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통 계 목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잔액발생률 (%)
51	2017	평생교육사업소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	5,585,700	4,414,300	44
	2018	평생교육사업소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000	6,043,200	3,956,800	40
52	2017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장학관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20,000,000	6,097,000	13,903,000	70
	2018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장학관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13,903,000	3,760,500	10,142,500	73
53	2017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장학관 건립	401-02 감리비	75,000,000	-	75,000,000	100
	2018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장학관 건립	401-02 감리비	75,000,000	29,820,940	45,179,060	60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2	검사위원	배영식, 홍인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7개부서
제 목	세외수입 세입예산편성 소홀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세외수입 과대·과소 예산반영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수납액	세입예산 반영		세입과목	비고
기획감사담당관 외 7개 부서	3,406,123	3,521,379	과대반영	693,766	“붙임 내역 참조”	
			과소반영	573,018		

#### □ 문 제 점

- 세입예산은 실제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추계가 어려울 경우 회기 중 세입이 발생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 2018년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본예산부터 3회추경까지 예산편성이 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외 7개 부서에는 세입예산이 미편성 되었거나, 계수조정 없이 결산(과대편성: 693,966천원, 과소편성: 573,018천원) 되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보다 적극적 추계와 정확한 세입 추이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징수된 세입원이 예산에 미반영 되어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붙임

○ 2018년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세입과목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수납액	세입예산 반 영
계		3,406,126	-	3,406,126	3,521,379	과대: 693,766 과소: 573,018
기획감사담당관	그 외 수 입	-	-	-	31,896	△31,896
민원지적과	과 징 금	30,000	-	30,000	78,005	△48,005
관 광 과	공유재산임대료	-	-	-	80,946	△80,946
	기 타 사 용 료	2,201,126	-	2,201,126	1,719,810	481,316
	그 외 수 입	50,000	-	50,000	120,122	△70,122
안전재난과	하 천 사 용 료	175,000	-	175,000	249,455	△74,455
	시·도유재산 매 각 수 입 금	-	-	-	86,744	△86,744
	불용품매각대	-	-	-	31,300	△31,300
환 경 과	재 활용 품 수 거 관 매 수 입	250,000	-	250,000	327,082	△77,082
도 시 과	시·도유재산 매 각 수 입 금	-	-	-	60,045	△60,045
상수도사업소	징수교부금수입	300,000	-	300,000	87,550	212,450
평생교육사업소	징수교부금수입	-	-	-	12,423	△12,423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3	검사위원	배영식	소관부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제 목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 개선 및 권고사항

**현황**

- 불임(2017~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문 제 점**

-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중 세입추계를 잘못된 초과세입금, 수립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등에 대하여는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 등 방만한 예산운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임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예산판단에 의한 계획수립 및 사업별 심사분석을 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붙임

○ 2017~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명	연도별	예산현액	결산액			잉여금세부내역			
			세입	세출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예산현액 대비율
계	2017	55,871	55,333	45,803	9,530	6,911	-	2,619	4.7
	2018	63,241	63,934	45,889	18,045	7,793	-	10,252	16.2
상수도 특별회계	2017	15,020	14,501	9,410	5,091	3,740	-	1,351	8.9
	2018	24,850	24,708	13,393	11,314	5,155	-	6,159	24.7
하수도 특별회계	2017	40,850	40,832	36,392	4,439	3,171	-	1,268	3.1
	2018	38,391	39,226	32,492	6,731	2,639	-	4,092	10.6

○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명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계	10,252	693	9,559	4,850	1,365	3,342
상수도 특별회계	6,150	△141	6,301	2,371	588	3,342
하수도 특별회계	4,092	835	3,257	2,479	778	-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4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환경과
제 목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 개선 및 권고사항

#### □ 「모음과 나눔매장」 운영현황

- 운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위 치: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75-1 / 매장면적: 46.08㎡
- 운영내용: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하거나 기증받아 판매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 이용도모
- 운영비용 및 수익금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비용					수익금 발생내역		비고
	소 계	인건비	물 품 구입비	공 공 운영비	건 물 임대료	금 액	사용내역	
2018년	34,297	23,703	393	1,801	8,400	11,709	지정기부	
2017년	27,811	18,546	704	1,961	6,600	9,015	세외수입	
2016년	28,189	16,626	2,397	2,566	6,600	12,627	세외수입	

#### □ 문 제 점

-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와 같은 법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수입대체 경비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모음과 나눔매장」의 수익금을 2017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편입하여 처리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지정기부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모음과 나눔매장」의 수익금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 처리하기 바람
- 아울러, 수익금을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직접 기탁하여 지정기부하기 위해서는 「모음과 나눔매장」 운영주체를 민간단체로 하거나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5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14개부서
제 목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개선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붙임과 같은 결과를 달성하였음

#### □ 문 제 점

- 지표관리의 경우 특별한 노력 없이 자동 달성이 가능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한 일부 지표가 있었고
- 성과보고서 지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100%미만)와 목표를 과도하게 초과달성(130%)한 35건에 대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적절성을 점검하거나 향후 성과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하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대부분의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은 관심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요구됨
- 초과달성이나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고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붙임**

○ **성과 달성 실적**

(단위: 개/백만원)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5	66	149	7	114	28	447,217

○ **원인분석 대상 지표**

(단위: 개/백만원)

부 서 명	성과목표			비고
	계	초과달성(130%)	미달성(100%미만)	
계	35	7	28	
기획감사담당관	2		2	원인분석 철저
민원지적과	3	1	2	"
행복돌봄과	1		1	"
세정과	1		1	"
관광과	1	1		"
건설과	5		5	"
환경과	4		4	"
농업정책과	1		1	"
도시과	1	1		"
교통과	2		2	"
허가민원과	1		1	"
보건소	7	2	5	"
기술기획과	2	2		"
하수도사업소	1		1	"
평생교육사업소	3		3	"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6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행복돌봄과, 안전재난과, 산림과, 보건소
제 목	부적절한 예산 전용 지양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부 서	전용 현황		감액	증액
행복돌봄과 외 3개 부서	“붙임 참고” (총 5건)	343,072	53,570	53,570

####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9조의 전용제도를 운영하며, 전용제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며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그러나 행복돌봄과 외 3개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4.4.) 및 제2회(9.20.)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가능했음에도 그 시기를 놓쳐 전용한 사례가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토록 한 원칙을 준수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함

□ 붙임

○ 예산전용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일자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총 5건		343,072	53,570	53,570	
행복돌봄과	보육·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3,000	8,000		2018-10-24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행 사 운 영 비	7,000		8,000	
안전재난과	재난방재 · 민방위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체험(보조)	기 타 보 상 금	25,000	25,000		2018-05-23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체험(보조)	행 사 운 영 비			25,000	
안전재난과	재난방재 · 민방위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보조)	행 사 실 비 보 상 금	4,214	1,870		2018-05-23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보조)	사 무 관 리 비	1,500		1,870	
산림과	임업·산촌	산림 수해복구	사 무 관 리 비	17,500	16,000		2018-10-16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 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848		16,000	
보건소	보건의료	보건행정서비스지원 (보건진료소)	공 공 운 영 비	120,850	2,700		2018-06-21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22,160		2,700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7	검사위원	신명철, 정진구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 세입 최소화 방안 마련				

### 개선 및 권고사항

#### □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 환급액

(단위: 천원)

환급액 합 계	2018년 부과분에 대한 환급액					지난연도 부과분에 대한 환급액
	소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 세	
318,600	47,441	170	38,742	632	7,897	271,159

#### □ 문 제 점

-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세입 환급액이 발생되어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대책이 요구됨
-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착오, 과세표준 착오, 감면대상 부과 등 사례 별 발생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 환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 원인별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
- 2018회계연도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 세입 환급액이 318,600천원이며, 이중 지난연도 부과분에 대한 환급액 271,159천원인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지난 연도 부과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생 즉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환급으로 민원발생 감소 및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8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회계과, 자치행정과, 기술기획과
제 목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개선 및 권고사항

#### □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단위: 원, 개)

구 분	수	가격(원)	비고
기계기구	6	19,918,220	
무체재산	4,714	2,035,116,840	

#### □ 문 제 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 중 기계와 기구는 기관차·객차 등의 궤도차량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이며,
- 무체재산은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말하고 있으나,
- 기계와 기구는 기술기획과의 세륵기, 비료살포기 등 6건을, 무체재산은 자치행정과의 한글2010, 보조기억매체시스템 등의 사용권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유재산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공유재산 등록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서 제외하고 관리하시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9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도시과
제 목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필요				

### 개선 및 권고사항

#### □ 특별회계 조례 설치현황

조 례 명	제 정 근 거	법률의 위임	존속기한	비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없음	없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하고 있음.
- 기존 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거나 존속기한이 2018.12.31.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12.31.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8년 말까지 관련 조치 미 이행 시 「지방재정법」 제9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 문 제 점

- 위 조례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 「가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설치및관리) 제1항의 “지방자치법 준용”은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말하나, 117조를 준용한다고 오기 명시하였음
- 또한 조례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서 “법제47조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하였지만 법 제47조제3항규정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바 「가평군 군계획조례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특별회계에 대해 그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향후 관련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정비를 권고함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0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관광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제 목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촉구				

### 개선 및 권고사항

#### □ 사업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고
계	4건	1,468,717	1,468,717	
관 광 과	농어촌민박활성화	96,000	96,000	
안전재난과	북한강자라섬정비사업	204,717	204,717	이월사업
농업정책과	저수지준설	30,000	30,000	이월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138,000	1,138,000	이월사업

#### □ 문 제 점

- 사업추진과정에서 축소(중단)된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은 추경 시 감액 편성하여 타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불용되었으며,
-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 3건의 사업은 이월된 사업으로써 사고(명시) 이월 후 사업이 중단(포기)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지속성,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1	검사위원	장상용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 평생교육사업소, 보건소
제 목	정수물품 관리 소홀				

### 개선 및 권고사항

#### □ 물품관리 현황

(단위: 건)

품 명	정 수	당해연도 증감		보유 수	비 고
		취득	처분		
버 스	2			3	정수초과
일 반 승 용 차	42	4	2	55	정수초과
냉 방 기	114			7	정수책정수 과다
실 체 현 미 경	8	5		9	정수초과
구 내 방 송 장 치	4		1	5	정수초과 및 취득누락
구 급 차				1	취득누락
고 소 작 업 차				1	취득누락

※ 구내방송장치 취득 누락 : 한석봉도서관

#### □ 문 제 점

- 정수물품 관리대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수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구입하여야 함
- 버스, 일반승용차 등 4종은 정수를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 냉방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수로 관리,
- 구급차, 고소작업차는 취득 누락하였음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정수 승인 조정을 하시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심의 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대한 정수물품 반영 여부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2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외 9개부서
제 목	공사계약 설계 규정금액 준수 및 과다설계 지양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불임(수의계약 후 과다변경으로 규정금액 초과, 당초 대비 20%이상 과다증액 설계)

####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금액은 1인 견적으로 수의 계약 할 수 있고 그 이상일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음
-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이유는 상호 비교하여 저가 견적을 제출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음인데, 수의금액 견적을 받아 계약한 후 물량증가를 이유로 과다한 설계변경이 되어 최종금액이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또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계로 인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함

#### □ 개선 및 권고사항

- 각종 사업 설계 시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계약 후 특별한 사안 이외에는 설계변경(증액)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불입

○ 수의계약 후 과다변경으로 규정금액 초과

(단위: 원)

번호	담당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증액금액	변경금액
1	관 광 과	산장관광지 산장1교 재가설공사(전기)	2018.01.16. ~ 10.11.	19,015,000	15,131,430	34,146,430
2	도 시 과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 석면철거공사	2018.02.23. ~ 08.21.	16,863,000	8,519,490	25,382,490
3	농업정책과	상색리 마을회관 앞 용수로 설치공사	2018.05.30. ~ 11.16.	15,984,000	7,309,480	23,293,480
4	건 설 과	개곡2리 종점 교량 확장공사	2018.05.09. ~ 09.25.	17,038,000	6,540,850	23,578,850

○ 당초 대비 20%이상 과다증액 설계

(단위: 원)

번호	담당부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증액금액	변경금액
1	산 림 과	2018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2권역)	2018.02.28. ~ 03.31.	48,795,000	10,125,010	58,920,010
2	산 림 과	2018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1권역,2차)	2018.02.28. ~ 03.31.	45,214,000	17,589,100	62,803,100
3	도 시 과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외1개소 석면철거공사	2018.02.23. ~ 08.21.	42,161,000	19,291,000	61,452,000
4	건 설 과	설악면 설곡리 비치 도로포장 공사	2018.05.03. ~ 05.31.	15,475,000	3,519,010	18,994,010
5	일 자 리 경 제 과	상면 봉수리 공장밀집지역 배수로 및 사면보호공사	2018.06.21. ~ .07.19.	16,640,000	4,691,200	21,331,200
6	농업정책과	화악1리 양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18.08.29. ~ 09.26.	14,136,000	5,521,400	19,657,400
7	농업정책과	연하리 마을회관 옆 배수로 정비공사	2018.11.14. ~ 12.12.	12,811,000	4,755,830	17,566,830
8	허기민원과	덕현리 마을안길 우수관로 설치공사	2018.03.02. ~ 05.30.	25,013,000	18,686,450	43,699,450
9	건 설 과	화곡2리 물퐁마을 교행차로 설치공사	2018.03.26. ~ 05.24.	30,777,710	9,093,140	39,870,850
10	안전재난과	소법리 화악천 보안보 하천정비공사	2018.04.06. ~ 10.11.	42,224,200	16,965,160	59,189,360
11	안전재난과	개곡리 가평천 개곡보 하천 정비공사	2018.04.05. ~ 06.03.	50,486,140	17,761,960	68,248,100
13	산 림 과	2018년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공사	2018.05.29. ~ 06.27.	24,624,500	6,072,570	30,697,070
14	안전재난과	행현2리 배수로정비공사	2018.08.10. ~ 12.12.	37,791,410	20,138,930	57,930,340
15	도 시 과	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 선외1) 개설공사(교통광장)	2018.10.01. ~ 11.24.	29,026,080	8,056,580	37,082,660
16	행복돌봄과	가평군 보훈회관 신축공사 (2차분)	2018.04.09. ~ 12.16.	610,656,900	106,231,730	716,888,630
17	건 설 과	군도8호선(수리재)도로확포장 공사(1차분)	2018.05.14. ~ 2019.05.13.	756,798,170	284,331,830	1,041,130,000
18	문화체육과	조종국민센터 수영장 천정 교체공사	2018.06.22. ~ 2019.10.19.	134,598,400	56,849,860	191,448,260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3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건설과
제 목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용 현황

관리부서	국·공유지 현황			무단사용 면적 (㎡)	비고
	지 번	면적(㎡)	소유자		
건설과	가평읍 금대리 936	2,017	국토교통부	1	
건설과	가평읍 금대리 613-5	230	가평군	30	
건설과	가평읍 금대리 554-7	15	가평군	2	

#### □ 문 제 점

- 가평읍 금대리 936일원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개인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국유지를 사유화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방치하였음
- 가평읍 금대리 554-7, 613-5 지방도 391호선 상에 불법시설물(펜스설치, 조경수 식재, 자재적치)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였음
- 민원 발생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 조치를 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제82조,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적기에 하지 않았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공유재산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 점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국유재산법」 제82조, 「도로법」 제72조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4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보건소
제 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집행잔액(반환금)			반환금 예산편성시기	반 환 금 집 행 일	비고
	계	국비	도비			
국가암검진(2017년)	1,198	949	249	-	'18.12.17.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2017년)	6,151	4,295	1,856	'18. 제3회 추경	-	
				'19. 제1회 추경	'19.04.03.	

#### □ 문 제 점

- 「국가암검진사업」 반환금을 2018년도 예산에 미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된 다른 사업(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 반환금)의 예산에서 집행함에 따라
- 2018년도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 반환금은 예산액이 부족하여 201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불용액 4,953천원)하였으며, 다음연도인 2019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회계업무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업무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5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행복돌봄과
제 목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감독 철저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지방보조사업자인 가평군시각장애인연합회장의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4분기 보조금 지급 제재 결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문화활동 참여사업비(은빛축제 1,650천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1,740천원) 미교부로 인해 회원들의 불이익 초래

#### □ 문 제 점

- 지방보조사업자 대표의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9조에 의한 4분기 보조금 지급 제재는 적절하였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문화활동사업(은빛축제,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액의 세부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 요인(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환수 조치하기 바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6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제 목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방치				

### 개선 및 권고사항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순세계잉여금)	비고
1,740,679	-	1,740,679	전액미집행

#### □ 문 제 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있는 1,740,679천원 중 지역 및 도시 부문 1,656,927천원은 군부대이전사업으로 2017년 사업이 종료되었고, 산업단지 부문 83,752천원은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로 2018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불용하였음
- 이로 인해 전체적인 세출예산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사업 없이 방치되어 있음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당시에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잔액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개선·권고하였으나, 별도의 조례나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가평군 도시공사 설립 계획’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2조에 의한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사업의 추진사업이 전무하다면 특별회계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막대한 예산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7	검사위원	정진구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제 목	성인지 예산 집행을 저조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성인지 예산 집행률

(단위: 천원, %)

부 서	성인지 예산현액	성인지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일 자 리 경 제 과	4,807,019	431,871	8.9	
문 화 체 육 과	14,440,805	5,547,064	38.4	
도 시 과	8,855,531	4,186,461	47.2	
농 업 정 책 과	96,058	54,253	56.4	

#### □ 문 제 점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남녀간 차이를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제도이나,
- 성인지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 성비 맞추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내용이 많아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자치단체특화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함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성인지 사업의 인식제고로 형식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교육, 문화, 체육 관련 사업들에 성별 영향 분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취지대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사업 활성화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기 바람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8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회계과
제 목	부가가치세 신고 부적정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가평뮤직빌리지 조성 결산현황

(단위: 천원)

년 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5년	17,300,000	17,300,000	13,992,106	3,307,894	
2016년	10,500,000	13,807,894	445,443	13,362,451	
2017년	3,332,000	16,694,451	7,443,118	9,251,333	
2018년	4,148,000	12,367,333	12,134,028	233,305	

-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공제 내역

(단위: 천원)

총매입공급가액	매입세액	공제세액	불공제세액	비고
17,502,299	1,750,299	480,113	1,270,186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단위: 건, 천원)

기분	소 계	지연발급	지연수취	공급가액	비고
2018. 1기 확정	461	8	453	91,438	
2018. 2기 확정	268	10	258	52,478	

#### □ 문 제 점

- 가평뮤직빌리지는 부동산 임대와 공연장, 스튜디오, 연습장 대관 및 숙박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건축 등 조성비 및 유지관리비 등 관련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가능함에도 27.4%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72.6%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18년도에만 최대 1,270,186천원을 과소 환급 받았음
-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전액 가산세는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대 계산하였음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정 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소하게 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2018년 귀속분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정밀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을 권고함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9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제 목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관리 소홀				

### 개선 및 권고사항

#### □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계	236,100	233,850	2,250	
(주) 우 리 솔	186,600	186,600		
심비영농법인	13,000	10,750	2,250	실적보고서 등 없음
조 흥 식 품	20,500	20,500		실적보고서 등 없음
다 미 소	16,000	16,000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 □ 문 제 점

-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 즉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 및 검토가 소홀함

#### □ 개 선 및 권 고 사 항

- 자부담인 부가가치세 지원 교부 여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류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당초 사업계획서와 실제 보조금 및 자부담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가평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행할 것을 권고함

## 2018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20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b>지난년도수입 수납률 제고</b>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 황

##### ○ 지방세수입 보통세 지난년도 수입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비고
2018년	850,000	4,706,753	584,609	1,121,950	3,000,194	12.4%	
2017년	2,200,000	7,717,201	2,224,806	2,532,261	2,960,134	28.8%	

##### ○ 미수납 사유

(단위 : 천원)

구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자금압박	기 타	비고
2018년	2,420	269,437	850,000	18,849	1,817,860	41,628	
2017년	11,849	259,889	473,654	-	-	2,214,743	

#### □ 문 제 점

- 당해연도 지방세(보통세) 수납률은 92.0%로 양호하나 과년도(보통세)수입은 12.4%로 현저하게 낮음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난년도(보통세)수입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 및 자금압박 등으로 나타나므로 관리소홀 등으로 장기간 방치 및 결손처분 등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으로 현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 함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3. 26.】

【부서명 기획감사팀등판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제목 1	예산 전용 부적정	검사위원명	조중윤
------	-----------	-------	-----

## [현 황]

○ 예산 전용 현황

조직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728,560	176,930	176,930		
행복돌봄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민간위탁금	15,000	3,200		2017. 3.21.	
		사무관리비			3,200		
자치행정과	사기진작시책지원	행사운영비	152,400	1,000		2017.10.20.	
		기간제근로자보수			1,000		
	사기진작시책지원	행사운영비	153,000	600		2017.10.14.	
		행사실보상금			600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42,000	18,130		2017.11.21.	
		기간제근로자보수	98,000		18,130		
환경과	수질환경보전 및 청평호 부유쓰레기 수거	사무관리비	15,160	4,000		2017.11.20.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		
안전재난과	재난경보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53,000	150,000		2017. 9.18.	
		시설비			150,000		

※ 2017년도 제2회 추경승인: 2017. 9. 13.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예산의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되므로,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하고 전용은 필요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그러나, 행복돌봄과를 제외한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이 변경(또는 신규)되어 충분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그 시기를 놓쳐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전용은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이라고 하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지극히 어려운 사업에만 운영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제 목 1	예산 전용 부적정	검사위원명	조중윤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 획 감사담당관	<p>○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한 후, 지출과목을 정확히 설정하여 불필요한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목경정이 필요한 예산 전수조사 및 반영을 하도록 하겠음</p> <p>-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 실무회의 전달 및 강조 실시 (2회 추가경정:2018.7.23. /3회 추가경정:2018.10.22.)</p> <p>○ 또한, 예산전용 요청 시 정확한 지출과목 설정을 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하여 사업계획 작성 시 정확한 지출과목이 설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2016년</th> <th colspan="2">2017년</th> <th colspan="2">2018년</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건</th> <th>금액</th> <th>건</th> <th>금액</th> <th>건</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예산전용</td> <td>16</td> <td>513,091</td> <td>8</td> <td>179,160</td> <td>6</td> <td>176,960</td> <td></td> </tr> <tr> <td>증감현황</td> <td>-</td> <td>-</td> <td>△8</td> <td>△333,931</td> <td>△2</td> <td>△2,20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예산전용	16	513,091	8	179,160	6	176,960		증감현황	-	-	△8	△333,931	△2	△2,2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예산전용	16	513,091	8	179,160	6	176,960																									
증감현황	-	-	△8	△333,931	△2	△2,200																									
자치행정과	<p>○ 「제18회 도지사기 친선 공무원 체육대회」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교통통제 자원봉사단체 실비 지급과 각 경기장에 발생하는 쓰레기 분기수거 등 추가사업비 발생분에 대하여 긴급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p> <p>○ 향후, 사업의 계획 변동이나 행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계획을 미리 전망하고 분석하여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겠음.</p>																														
일 자 리 경 제 과	<p>○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재료비를 사용 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남은 재료비를 전용하였으나 올해는 본예산에 인건비 비율을 80%로 전년대비 10% 증액하였으며, 사업 중간 추계를 통해 전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p>																														

<p>환경과</p>	<p>○ 상기 사업은 행복돌봄과의 군립 어린이집 신축계획에 따른 방제 장비 이전 요청(2017.11.15.)에 따른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축조 사업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 후 인지하여 예산 전용이 불가피 하였음.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후 진행하겠음.</p>
<p>안전재난과</p>	<p>○ 관내 재난취약지구에 설치된 경보시설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다원화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재난예·경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 사업진행상 추가경정예산 계획과 시기가 엇갈려 기존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일부를 시설 및 부대비(시설비)로 예산을 변경(전용)하였고,  ○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상 변동이 있을 시에는 최대한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p>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2.】

【부서명: 기획감사담당관 공통】

제목 2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소홀	검사위원명	조중윤, 장기원
------	-----------------	-------	----------

## [현 황]

- 자료: 붙임

## [문 제 점]

-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됨에 따라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에 맞추어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 등 19개 부서의 예산대비 70% 미만 집행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사업 계획 단계부터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실제 예산집행 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특히, 100% 미집행한 사업도 14개 부서 37건 869,172천원으로서, 전년도의 11개 부서 32건 463,492천원보다 증가하였음.
-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수혜자 판단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업비를 계상한 것에 기인하며, 무리한 예산의 편성은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 후, 사업의 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제목 2-붙임]

2017예산 중 70% 미만 집행내역

(단위: 천원)

실과소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b>합계</b>	<b>62건</b>	<b>7,680,777</b>	<b>509,206</b>	<b>7,171,571</b>	
<b>기획감사담당관</b>	<b>5건</b>	<b>24,900</b>	<b>1,235</b>	<b>23,665</b>	
	포상금	1,500	200	1,300	
	배상금등	20,000	962	19,038	
	기타보상금	2,000	0	2,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0	1,000	
	공공운영비	400	73	327	
<b>행복돌봄과</b>	<b>5건</b>	<b>48,061</b>	<b>5,000</b>	<b>43,061</b>	
	사회복지사업보조	861	0	861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	5,000	15,000	
	"	500	0	500	
	사회복지사업보조	900	0	900	
	민간경상사업보조	25,800	0	25,800	
<b>일자리경제과</b>	<b>3건</b>	<b>37,478</b>	<b>9,960</b>	<b>27,518</b>	
	사무관리비	1,000	210	790	
	민간경상사업보조	35,621	9,750	25,871	
	"	857	0	857	
<b>민원봉사과</b>	<b>3건</b>	<b>2,800</b>	<b>6</b>	<b>2,794</b>	
	공공운영비	600	6	594	
	포상금	1,000	0	1,000	
	시설비	1,200	0	1,200	
<b>세정과</b>	<b>1건</b>	<b>1,000</b>	<b>0</b>	<b>1,000</b>	
	배상금등	1,000	0	1,000	
<b>문화체육과</b>	<b>2건</b>	<b>16,319</b>	<b>132</b>	<b>16,187</b>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132	4,868	
	행사운영비	11,319	0	11,319	
<b>환경과</b>	<b>3건</b>	<b>508,600</b>	<b>48,363</b>	<b>460,237</b>	
	기타보상금	6,600	0	6,600	
	과오납금등	2,000	353	1,647	
	시설비	500,000	48,010	451,990	

실과소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b>농업정책과</b>	<b>6건</b>	<b>1,262,372</b>	<b>18,997</b>	<b>1,243,375</b>	
	시설비	99,052	16,646	82,406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0	371	9,629	
	사무관리비	10,000	1,780	8,220	
	민간경상사업보조	3,920	0	3,920	
	사무관리비	1,400	200	1,200	
	민간자본사업보조	1,138,000	0	1,138,000	
<b>산림과</b>	<b>8건</b>	<b>642,300</b>	<b>28,176</b>	<b>614,124</b>	
	사무관리비	4,500	0	4,500	
	기타보상금	1,000	0	1,000	
	공공운영비	2,100	79	2,021	
	시설비	30,000	0	30,000	
	사무관리비	5,700	231	5,469	
	재료비	5,000	0	5,000	
	시설비	591,000	27,466	563,534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	400	2,600	
<b>건설과</b>	<b>3건</b>	<b>1,024,240</b>	<b>178,038</b>	<b>846,202</b>	
	사무관리비	2,240	0	2,240	
	시설비	1,015,000	176,736	838,264	
	시설부대비	7,000	1,302	5,698	
<b>안전재난과</b>	<b>6건</b>	<b>977,657</b>	<b>114,367</b>	<b>863,290</b>	
	시설비	150,000	44,974	105,026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785	0	6,785	
	사무관리비	1,840	0	1,840	
	보험금	9,032	1,672	7,360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0	600	9,400	
	시설비	800,000	67,121	732,879	
<b>도시과</b>	<b>1건</b>	<b>2,538,000</b>	<b>87,445</b>	<b>2,450,555</b>	
	시설비	2,538,000	87,445	2,450,555	
<b>허가민원과</b>	<b>3건</b>	<b>25,000</b>	<b>0</b>	<b>25,000</b>	
	과오납금등	15,000	0	15,000	
	행사실비보상금	5,000	0	5,000	
	기타보상금	5,000	0	5,000	

실과소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관광사업단	1건	220,000	0	220,000	
	시설비	220,000	0	220,000	
보건소	4건	5,580	560	5,02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	330	2,670	
	공공운영비	1,680	164	1,516	
	의료및구료비	400	66	334	
	"	500	0	500	
기술기획과	5건	77,170	16,594	60,576	
	기타보상금	3,000	500	2,500	
	사무관리비	3,500	985	2,515	
	공공운영비	49,000	11,781	37,219	
	"	14,670	2,128	12,542	
	기타보상금	7,000	1,200	5,800	
소득개발과	1건	1,500	333	1,167	
	사무관리비	1,500	333	1,167	
상수도사업소	2건	267,800	0	267,800	
	시설비	2,800	0	2,800	
	"	265,000	0	265,000	

제 목 2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검사위원명	조중윤,장기원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기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 집행 실적이 50%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전달회의를 통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 해결 및 빠른 해결을 요하는 주요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음.</li> <li>-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 실무회의 전달 및 강조 실시 (2회 추가경정:2018.7.23. /3회 추가경정:2018.10.22.)</li> <li>○ 향후 예산관리 효율성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집행잔액이 2년 이상 과다 하게 발생된 과목에 대하여는 2018년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또는 미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음.</li> </ul>
행복돌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신청 건이 없어 전액집행하지 못하였으며,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사업,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집행사유가 미 발생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함</li> <li>○ 국도비보조사업 및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비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해당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사유 발생 시 신속히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ul>
일 자 리 경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나 예산은 사전에 보조비율대로 시군에 일괄 배정이 되어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li> <li>○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대상자를 늘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li> <li>○ 사무관리비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li> </ul>

<p>민원봉사과</p>	<p>○ 사업예산 집행내역 확인 후 미 집행액에 대하여는 추경에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신고포상금 및 불법부동산영업사무소 대집행비는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p>
<p>세정과</p>	<p>○ 배상금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차량이나, 번호판 부착 부속품의 훼손 또는 파손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이며, 정확한 집행예상액 추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함.</p>
<p>문화체육과</p>	<p>○ 지난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집행사유 발생 시 추경액 변경 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음.</p>
<p>환경과</p>	<p>○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소요예산을 명확히 파악한 후 예산 편성하고, 사유 미 발생 및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이 변경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겠음.</p>
<p>농업정책과</p>	<p>○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시설비의 경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가뭄해갈에 따른 사업대상지 재선정 추진으로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잔여사업비를 이월시켜 2018.3월 수요재조사를 통해 읍.면 재배정하여 공사추진중임.</p> <p>○ 또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은 수도법 개정으로 사업부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전액(1,138,000천원)을 사고이월시켰으나 2018.4.2일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 신청으로 사업비 반납예정임.</p> <p>○ 향후 당초 예상 및 계획과 다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조치 등 조정을 통하여 예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p>

<p>산림과</p>	<p>○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수혜자 판단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17년도에는 예년 보다 적은 강우로 인하여 산림재해 사무관리비와 응급복구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불임과 같이 주요사업 예산의 70% 미만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예산편성토록 하겠으며, 미집행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요구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p>
<p>교통과</p>	<p>○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복택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으로 2017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미집행 되었음.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p>
<p>건설과</p>	<p>○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경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으로 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협의중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추진 중임.</p> <p>○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필요한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음.</p>
<p>안전재난과</p>	<p>○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9,400천원), 보험금(7,360천원),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6,785천원)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세워진 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성격에 따라 예산 삭감 조치를 못한 실정이며,</p> <p>○ 그 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음.</p>
<p>도시과</p>	<p>○ 향후 군계획시설사업(도로 등)의 사업예산편성 시 보상협의 및 공사 진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p>

허가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예산편성후 100% 미집행한 사업이 3건 발생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집행사유: 과오납금등(과오납된 과징금 반환신청 건 없음), 행사실비보상금(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샵계획이 2018년으로 변경되어 미집행), 기타보상금(공익신고 보상에 따른 지차체상환금으로 2017년도 공익신고 건 없음)</li> </ul> </li> <li>○ 향후 당초 예상 및 계획과 다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조치 등 조정을 통하여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li> </ul>
관광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당초 예상 및 계획과 다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조치 등 조정을 통하여 예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li> </ul>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편성 후 사업예산을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하겠으며, 2018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산은 추가경정예산(3차) 편성 시 조정하였음.</li> <li>○ 향후,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음.</li> </ul>
기술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관리 담당자 결원으로 인해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포장유지보수관리 업무가 지연되거나 취소됨으로 인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등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청사관리 담당자 충원을 통해 정상적인 시설 및 기자재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하겠음.</li> <li>○ 2018년 11월 청사관리 담당자로 시설관리직 1명을 충원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사 유지보수관리의 정상적 처리 및 다목적교육관 외벽 보수개선공사 등 지연사업도 2019년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li> <li>○ 농업인 교육의 3년간 예산집행 실태를 분석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2017년의 경우처럼 자체강사 초빙이 많아 강사료 미지출로 기타보상금 잔여 예산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li> </ul>

소득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작물 담당자 결원으로 인해 식량자원 생산교육 업무가 지연되거나 취소됨으로 인해 교육관련 일반수용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담당자 충원을 통해 식량자원 생산교육 및 지도 업무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하겠음.</li> </ul>
상수도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급수시설설치(265,000천원)는 하수도사업소 및 환경과와 연계 사업으로 연계부서의 추진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연사유가 일부 해소되어 2018년 원인행위액 255,977천원으로 9,023천원에 대해 불용하였으며 이중 연계부서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115,296천원에 대해 사고 이월하여 2019년 4월 사업 완료 예정임.</li> <li>○ 지하수관리사업 시설비(2,800천원)의 경우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지하수를 폐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고 건 수가 해마다 차이 커 예측이 어렵고 민원신고 접수 후 예산을 반영 시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건 정도의 민원신고 건을 예상하여 예산을 세운 사항임. ※ 2018년 예산: 예상불용액 3차 추경 감액조치</li> <li>○ 지방재정법 제 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령·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는 바,</li> <li>○ 향후,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음.</li> </ul>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11.】

【부서명: 기획감사담당관 외 7개 부서】

제목 3	기금 운용 소홀	검사위원명	조중윤
------	----------	-------	-----

## [현 황]

### ○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조성 목표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51,796	△8,736	6,633	15,369	43,060
통합관리기금	-	24,982	△4,539	2,627	7,167	20,442
지방채상환기금	-	771,992	219	219		991
사회복지기금	6,500	6,802	130	232	1014	6,933
문화예술발전기금	1,500	1,423	136	136		1,560
식품진흥기금	-	162	8	73	64	170
체육진흥기금	-	1,058	1	27	27	1,058
가평군 장학기금	30,000	13,844	△4,958	2,642	7,600	8,886
폐기물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86	63	92	28	149
재난관리기금	-	1,433	91	446	355	1,524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000	1,019	3	26	23	1,022
옥외광고기금	-	212	108	108		320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에서는 「통합관리기본법」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 중 개별법에 따라 설치 의무화된 기금이외의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장학기금, 농업인단체육성기금 등 4개기금은 각각 조례에 그 존속기간과 조성목표를 두고 있음.
- 이 중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농업인단체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은 조성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장학기금은 2017년도에 가평군 장학관 건립사업에 74억 원을 지출하여 기금조성목표인 2024년까지 300억 원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아니하고 매년 반복적인 사업만을 편성하여 형식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발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 예치 등 자금관리만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조성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장학기금은 조례에 명시된 기금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제 목 3	기금 운용 소홀	검사위원명	조중윤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기금들은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기금운용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음.</li> <li>- 2019년 본예산 편성시 기금담당자 실무회의 개최(2018.9.7.)</li> </ul>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li> </ul>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군의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가평군폐기물처리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특성상 목표액은 따로 정하지 않음.</li> <li>※ 기금 존속기간은 202011.10까지임. 다만 존속기간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li> </ul>
안전재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복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그 성격상 사고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기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li> <li>○ 2018년도 78,000천원의 기금 조성하려는 운용계획 심의가 가결된 상태로 앞으로 철저히 기금을 운용하여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li> </ul>

<p>도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정비기금 목표액은 총 1,000백만원으로써,</li> <li>○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일반회계전출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타회계 전출금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 및 수입구조를 개선하고자 가평균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를 기금재원으로 조성함. (2018년 한해 3,237천원 기금 조성)</li> <li>○ 기금조성 목표액 1,000백만원 달성 후 「가평균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 사업을 추진하겠음.</li> </ul>
<p>허가민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형식적이 아닌 기금조성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등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임.</li> </ul>
<p>기술기획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이단체육성기금은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하며 선진농업 기술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조직체 전문교육 및 연찬, 선진기술 연수, 워크샵, 우수회원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음.</li> <li>○ 매년 가평농업을 이끌어 갈 신세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36명의 우수회원자녀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4-H 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li> <li>○ 또한 150여개의 농업인단체 연구회 및 작목반 대표에게 리더십 향상교육, 국내 새로운 선진 농업기술 견학 등으로 소득작목 발굴, 부자되는 농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li> <li>○ 향후 농업인이 부자되는 농업인 단체를 만들어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겠음.</li> </ul>
<p>평생교육사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학기금 300억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사회단체·개인 또는 사업 수혜자들의 기부 참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여 기금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음.</li> </ul>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3. 27.】 【부서명: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제목 4	순세계잉여금 처리 부적정	검사위원명	장기원
------	---------------	-------	-----

## [현 황]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원)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보조금 반환액	순세계잉여금
953,127,000	950,723,158	496,220,530	106,517,950	347,984,678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원)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순세계잉여금	비고
1,747,224,800	1,747,224,800	-	1,747,224,800	

## [문 제 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발전소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차원에서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주변지역 주민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적극 집행하여야 함에도 53%의 집행율로 저조한 실정임.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년째 예산만 확보하고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음.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영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 없이 방치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주변지역주민들의 공동이익 내지는 문화욕구 충족, 체육증진 등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사업 발굴로 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 가평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사업의 추진사업이 전무하다면 특별회계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잔액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제 목 4	순세계잉여금 처리 부적정	검사위원명	장기원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p>기획감사 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발전소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차원에서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을 유도하여 집행실적을 높힐 수 있도록 하겠음.</li> <li>○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는 민선7기 공약사항 중 가평군 도시공사설립의 확정 여부에 따라 폐지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6월 : 민선7기 공약사항 확정(가평군도시공사 설립)</li> <li>- 2018. 7월 : 가평군 도시공사 설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li> <li>- 2019. 1월 : 가평군 도시공사설립 검토 보고(1차)</li> <li>- 2019. 2월 : 화성시 및 화성시도시공사 벤치마킹</li> <li>- 2019. 7월 : 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성 검토</li> <li>- 2019. 8월 : 가평군 도시공사설립 검토 보고</li> </ul> </li> </ul>
<p>일 자 리 경 제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관련부서 목적사업이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5월 중 : 관련 부서 검토 의견 수렴(경제과, 도시과)</li> <li>- 2018. 6월 중 :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폐지 검토</li> <li>- 2018. 7~8월 중 :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폐지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li> <li>- 2018 9~10월 중 :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li> <li>- 사업추진이 전무하여 폐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자함</li> </ul> </li> </ul>

<p>건설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2017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용자) 자금은 약 255백만원이었으며 2012년 당시 용자되어 2017년도에 회수된 금액이 약110백만원임. 또한, 2017년도 용자된 금액이 약 30백만원으로 2017년도말 주민복지지원사업(용자)을 위한 자금은 약 335백만원이며 이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분되어 표면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하게 보이는 문제점이 발생함. 실제 시설비로 지정된 금액에 대한 집행율은 약 75%임.(시설비 총액: 약 575백만원, 지출액: 약 434백만원)</li> <li>○ 향후 지원 사업추진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집행하겠음.</li> </ul>
<p>도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평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고, 더 이상 특별회계를 존속할 실익이 없기에 관계부서 [회계과(기업팀), 기획감사담당관(예산팀)]과 협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도록 하겠음.</li> </ul>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3. 30.】

【부서명: 세정과】

제목 5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으로 인한 이자 지급	검사위원명	장기원
------	------------------------	-------	-----

## [현 황]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환급액: 1,906,436,130원
  - 이로 인한 이자지급액: 25,225,170원 (세부내역 불임)

## [문 제 점]

- 세금의 정확한 부과는 세무행정의 군민 신뢰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착오로 인한 감액 등은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과 세입의 감소를 초래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무행정의 실무교육을 통해 세금 징수액의 환부를 최소화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위해 세정과 전직원 지방세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연찬회 및 전문교육에 참석하여 세법지식의 공유 및 세무업무 전문성 제고에 노력함.
- 과오납 대상자에 환급안내문을 주1회 발송하여 과오납 환부 이자 최소화 노력함.

[제목 5-붙임]

환급액 중 이자지급액 사유

(단위: 원)

환급사유	환급가산건수	환급가산금
계	4,221	25,225,170
11-기부과자 부과 등 이중부과	3	550
12-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667	11,253,800
13-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	13	161,360
14-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7	19,210
16-비과세감면 사후관리	3	430
21-이의신청 결정	3	300,030
23-소송결정	4	26,920
31-기 납부자 이중납부	34	6,980
32-신고납부 후 재신고 납부	4	2,540
33-과세물건소유자와 거주자의 이중납부	5	3,080
34-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51	640,790
35-원인무효	52	6,538,680
36-과세물건 착오신고	45	199,220
37-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	86	1,014,660
39-기타	2	1,710
41-자동차 소유권 이전	1,202	59,850
43-등록세 납부 후 미등기	58	45,170
44-자동차세 과세 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643	33,790
49-기타	6	8,070
51-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90	4,102,140
72-타시군 환급(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1,243	806,190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8.】

【부서명: 행복돌봄과】

제목 6	예산집행 관리 소홀	검사위원명	장기원
------	------------	-------	-----

## [현황 및 문제점]

- 행복돌봄과 소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이 2017년 당초예산 113,100천원이 편성되어 운영 중 61,425,640원은 행사운영비 등 3개 과목으로 변경 집행된 후 2017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기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지 않고 편성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결산 시 예산과목이 없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목) 예산액에서 집행된 예산내역

통 계 목	금액(원)	비 고
행사운영비	6,146,620	
사회보장적수혜금	53,528,300	
행사실비보상금	1,750,720	
계	61,425,640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 집행된 내역을 정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 지출된 예산과목이 전액 감액되었으나, 담당자가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재정프로그램의 통계목별 조회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아 회계연도폐쇄일이 지난 후에 확인되어 조정할 수 없었으며, 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재정프로그램 운영이 미숙하였음
- 재정프로그램 철저한 숙지 및 추경 시 예산집행내역 정리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5.】

【부서명: 기획감사담당관, 공통】

제목 7	성과보고서 실적 관리 소홀	검사위원명	장기원
------	----------------	-------	-----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이 개정되면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의무화됨.  
※ 성과계획서: 2015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시, 성과보고서: 2016회계연도 결산 시
- 성과계획서는 전년도(Y-1)에 해당연도(Y)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설정하고, 성과보고서는 다음연도(Y+1)에 해당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측정·분석하고 결산검사위원 및 의회에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문 제 점]

- 성과지표 실적이 미 입력(3개 부서 15개 지표)되어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와 ‘성과달성도 지표수’와의 차이 발생 (붙임내역 참고)
- 또한 ‘단위사업 성과보고’에서 각 성과지표의 관련세부사업 선택 시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아,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서 단위사업 수가 누락(5개 부서 20개 지표, 35개 관련세부사업)되어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측정 불가 (붙임내역 참고)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지표의 실적 및 관련세부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총괄부서(예산팀)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100% 미만) 또는 초과달성(130% 이상)인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수준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하며,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니, 성과계획서 수립부터 정책사업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적정성, 실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전체적으로 재조정 필요

##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제목 7-붙임]

성과지표 실적 미입력 현황

부서명	건수	정책사업명	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
계		3개 부서 / 15개 지표				
민원봉사과	6	주민 편의 시설 관리	가로,보안 등 신설 및 교체처리(건)	100	100	100
			개발부담금 징수 건수(건)	25	21	84
		도시개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건)	139	151	108
			상세주소 부여실적(점)	100	100	100
			개별공시지가 검증반영율(인용율)(%)	65	65	100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실적(점)	100	100	100
보건소	4	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고혈압약물치료율(%)	지역사회건강통계 미공포 (5월 공포 예정)		
			난임부부지원(%)	91.2%	96.6%	106
			규칙적인 걷기운동 실천율(%)	지역사회건강통계 미공포 (5월 공포 예정)		
			성인남자 흡연율(%)	지역사회건강통계 미공포 (5월 공포 예정)		
기술기획과	5	농업 정예인력 육성	교육과정 이수비율(%)	144	133	92
			교재발간여부(종)	4	12	300
			임대농기계 만족도(%)	72	61	84
	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	토양정밀검정비료사용처방서 발급(건)	3,650건	4,054건	111	
		친환경인증분석센터 인증건수(건)	548농가	589농가	107	

[제목 7-붙임]

단위사업 성과보고 시 관련세부사업 반영 누락현황

부서명	지표 누락건수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지표명	관련 세부사업명
계		5개 부서 / 20개 지표			
산림과	4	산림재해방지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방제율 달성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경상)/(자본),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군비)
				위치관제시스템 산불신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산림관리	등산로 정비 실적	숲길관리	
		자연환경 보호	공원관리	공원이용객수 증가율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
안전 재난과	4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민방위 운영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훈련
				안전점검의 날 추진 여부	민방위교육훈련
		개최결과보고	민방위교육훈련		
재해 및 재난 예방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물놀이 사고예방 활동	안전사고 예방		
보건소	4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보건행정 및 의료 서비스 기반조성	보건기관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건행정서비스지원, 농어촌보건소등 이전 신축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상담 및 진료서비스 제공자 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강,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수입대체경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보건행정서비스지원(보건진료소)

부서명	지표 누락건수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지표명	관련 세부사업명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율	어린이예방접종사업, B형주산기감염예방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예방접종 정보제공실적	성인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술 기획과	1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	안전한 농업기반시설 구축	청사관리
소득 개발과	7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GAP 포함) 비율	지역균형발전
				시설원예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생산 만족도	친환경 채소생산 기술시범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을 통한 소득향상 만족도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
		농업 정예인력 육성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농업·농촌 자원분야 산업 재산권 확보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정예인력 육성 지원 확산 정도	전문농업인 양성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소득작목 개발연구 농촌지도기반확충	친환경농업 미생물 보급 토양개량 및 악취저감 만족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사계절 꽃묘 안정 생산	사계절 꽃재배 읍면 보급 시범				

제 목 7	성과보고서 실적 관리 소홀	검사위원명	장기원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담당관	○ 성과계획서 수립시부터 전년도 성과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사업, 성과지표 연계의 적정성 및 결과지향적인 성과지표의 구체적 산정방법 등을 각 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여 성과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실적 및 세부사업 등이 누락 및 미 제시되는 건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민원봉사과	○ 성과지표의 실적 및 관련 세부사업의 입력을 철저히 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산림과	○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성과보고서 실적을 입력하여야 하였으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성과지표 실적을 미 입력하였고,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단위사업 별 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목표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입력하도록 하겠음.
안전재난과	○ 본예산 편성 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 등의 성과계획서를 엄밀히 설정·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 그 사업의 실적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성과목표의 기준치 달성 등의 지표를 분석하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보건소	○ 성과지표의 실적은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발표)가 매년 5월 중 공포됨에 따른 미입력 되는 지표가 발생되므로 성과지표계획 다른 지표로 대체하거나 조정하여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기술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실적 및 관련세부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음.</li> <li>○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또는 초과달성인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수준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토록 할 계획임.</li> <li>○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성과계획서 수립부터 정책사업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적정성, 실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음.</li> </ul>
소득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실적 및 관련세부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음.</li> <li>○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 또는 초과달성인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수준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토록 할 계획임.</li> <li>○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성과계획서 수립부터 정책사업과 성과지표의 연계성·적정성, 실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음.</li> </ul>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4.】

【부서명: 기획감사담당관, 공통】

제목 8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소홀	검사위원명	장상용
------	-----------------	-------	-----

## [현 황]

- 자료: 붙임

## [문 제 점]

- 세외수입 대부분이 당초 예산편성 후 경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항목으로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추가경정을 통한 세입예산 편성이 가능하나,
- 기획감사담당관 경상적 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 외 30개과목 1,906,131천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세입예산 조정 없이 결산되었고,
- 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 경상적 세외수입(기타수수료) 외 7개 과목 838,304천원은 실제수납액이 없거나 수납액이 감액되었는데 계수조정 없이 결산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 수납액의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을 통한 계수조정과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등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이니 당초 예산부터 편성하기 바람.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제목 8-붙임]

세입예산 결산현황(세외수입)

(단위: 원)

부서별	과 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 액	비 고
계			2,326,149,000	4,232,280,956	-1,906,131,956	
기획감사담당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0	44,232,873	-44,232,873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0	60,677,414	-60,677,414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0	10,696,715	-10,696,715	
행복돌봄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99,150,000	211,077,850	-111,927,850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209,168,000	244,166,444	-34,998,444	
민원봉사과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10,000,000	41,957,070	-31,957,070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629,000	51,240,320	-50,611,320	
세정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400,000,000	459,707,840	-59,707,840	
문화체육과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0	64,709,060	-64,709,060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0	2,632,550	-2,632,550	
환경과	경상적세외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80,000,000	326,427,850	-46,427,850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11,000,000	72,450,321	-61,450,321	
농업정책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0	20,120,933	-20,120,933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0	2,860,000	-2,860,000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693,000	26,616,220	-25,923,220	
산림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300,600,000	396,572,500	-95,972,500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240,000,000	264,315,370	-24,315,370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0	9,380,938	-9,380,938	
건설과,교통과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1,800,000	18,039,660	-16,239,660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73,177,000	163,346,807	-90,169,807	

부서별	과 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 액	비 고
안전재난과	경상적세외수입	하천사용료	175,000,000	285,255,210	-110,255,210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	182,000,000	289,782,620	-107,782,620	
	임시적세외수입	변상금	0	6,134,730	-6,134,730	
도시과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0	48,226,101	-48,226,101	
허가민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이행강제금	0	525,513,470	-525,513,470	
보건소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432,000	70,427,592	-69,995,592	
상수도사업소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	300,000,000	334,773,870	-34,773,870	
하수도사업소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42,500,000	88,220,000	-45,720,000	
평생교육사업소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0	10,076,908	-10,076,908	
관광사업단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0	71,141,720	-71,141,720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0	11,500,000	-11,500,000	

○ 세입예산 결산현황(세외수입)

부서별	과 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 액	비 고
<b>계</b>			<b>1,047,114,000</b>	<b>208,809,160</b>	<b>838,304,840</b>	
행복돌봄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	103,000,000	0	103,000,000	
민원봉사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	68,000,000	34,333,860	33,666,140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30,000,000	16,550,540	13,449,460	
건설과,교통과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190,480,000	50,617,260	139,862,740	
허가민원과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500,000,000	0	500,000,000	
보건소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5,500,000	740,000	4,760,000	
소득개발과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36,000,000	20,172,890	15,827,110	
관광사업단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114,134,000	86,394,610	27,739,390	

제 목 8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소홀	검사위원명	장상용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세입과 관련 있는 각 실과소와 협의하여 추계할 수 있는 세입원에 대한 세입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에 미반영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li> <li>- 예산 편성 시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 실무회의 전달 및 강조 실시 (2회 추가경정:2018.7.23. /3회 추가경정:2018.10.22.)</li> <li>○ 아울러, 주기적으로 세입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되는 세입원을 최소화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음.</li> </ul>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향후 실제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ul>
행복돌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기타사용료 및 기타수수료의 경우 세외수입 프로그램 상 세입예산과목 코드를 착오 운영함에 따라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세외수입시스템에 기타사용료(여성회관 시설사용료)와 기타수수료(여성회관 수수료)로 구분 편성하여 조치하였음.</li> <li>○ 향후, 실제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한 세입예산과목대로 부과 징수입력에 철저를 기하여 적절한 수준의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ul>
민원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예산 편성시에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세외수입 수납액의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을 통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음</li> </ul>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은 수입발생이 임의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 후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항목인 임대수입, 매각수입, 부담금 등은 추가경정을 통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적절한 수준의 금액은 당초 본예산부터 편성하도록 노력함.</li> <li>○ 2019년도 본예산액 450백만원을 초과하여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을 통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li> </ul>

문화체육과	○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사업 수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 광 과	○ 향후 세외수입 세수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정확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 설 과 교 통 과	○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추계할 수 있는 세입원에 대한 징수가능액을 파악하여 계수조정에 노력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과목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액과 실제수납액간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세수 변경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 세외수입 수납액의 변경 시 실제수납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추가경정을 통한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 경 과	○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추가경정 시 적정 세외수입 세입예산편성을 하겠으며, “그외수입”에 과다불입을 지양하고 세입처리 사업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정과목에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 향후 추계할 수 있는 세입원에 대한 세입예산편성을 통해 징수된 세입원이 예산에 미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수 변경 시 추가 경정을 통한 계수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산림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와 시설 임대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그외 수입으로 보조금 반납 및 칼봉산자연휴양림 카드수입금 위약금 등 수납하고 있으며,</li> <li>○ 2017년도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와 연말 산지전용협의 면적 증가로 인하여 실제수납액이 증가 하였으며, 또한 임산물 유통지원 보조금 반납과 칼봉산자연휴양림 카드수입금 위약금 등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일부 계수조정 하여야 하였으나 수납액 증가액을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액이 발생하였음.</li> <li>○ 향후에는 누락되는 세입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납액의 변경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수조정을 통하여 누락되는 세입원이 최소화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음.</li> </ul>
<p>도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은 수입발생이 임의적이고, 예상이 불명확하나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로 최대한 세입을 추계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p>허가민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검토결과 “건축법 등 법령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세입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목착오가 발생하였음. 2018년도부터는 세입과목구분을 명확히 하여 세입예산 편성하겠음. ※ 223-01(과징금) =&gt; 223-01(이행강제금)</li> <li>○ 또한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징수된 세입에 대해서는 누락없이 추가경정을 통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음.</li> </ul>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세외수입을 검토하여 세입을 추계한 후, 추가경정예산(3차)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 조치하겠음.</li> </ul>
기술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수수료(기타수수료), 고품미생물 판매대금(기타,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세입 예측과 추가경정을 통한 계수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도록 하겠음.</li> </ul>
소득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 의거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토록 되어있어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위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영에 의한 임가공료가 일정치 않아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li> <li>○ 현재 위탁운영을 위한 협약 중에 있으며 2018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음.</li> </ul>
상수도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적세외수입(징수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부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각 시·군에 징수 교부하는 사항으로 그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나, 추가경정을 통한 계수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겠음.</li> <li>○ 세외수입 예산편성 시 추가경정을 통한 계수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li> </ul>
하수도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수입은 예측이 불가하게 발생하는 항목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전년도 과태료 수입을 평균으로 반영하고 이후 수납액 변경 시에는 추가 경정을 통한 계수 조정할 계획임.</li> </ul>
평생교육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은 수입발생이 임의적이고, 예상이 불명확하나 예산편성 시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로 최대한 세입을 추계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9.】

【부서명: 세정과】

제목 9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	검사위원명	장상용
------	-------------------	-------	-----

## [현 황]

- 자료: 붙임

## [문 제 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 최근 4년간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 징수(25~30%)보다 현저히 저조한(5.2~16.2%) 실정으로, 수동적 징수대책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조치(계획)결과]

- 부동산 및 채권압류 2,283건 3,298백만원, 부동산 등 경매 교부청구 15건 80백만원, 결손처분 1,682건 1,046백만원 등을 처리하여 과태료 등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였음.
- 2018년 징수비율은 12.45%로 전년대비 4.65% 증가하였음.
- 2019년도에는 인력보강(채권추심원 1명 기채용, 정규직원 1명 증원 예정)을 실시하여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제목 9-붙임]

지난년도 징수현황

(단위: 천원)

구분	년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비율 (%)	비고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세외수입	2017	5,899,750	459,707	5,440,043	1,137,186	4,302,856	7.8	
	2016	5,266,419	854,771	4,411,647	324,872	4,086,775	16.2	
	2015	5,466,494	285,893	5,180,600	1,175,271	4,005,329	5.2	
	2014	5,151,897	337,847	4,814,049	34,384	4,779,664	6.5	
지방세	2017	7,717,200	2,224,805	5,492,395	2,532,260	2,960,134	28.8	
	2016	5,168,233	1,554,193	3,614,039	844,625	2,769,413	30.1	
	2015	5,386,013	1,368,988	4,017,024	1,400,951	2,616,072	25.4	
	2014	6,157,679	1,612,323	4,545,356	1,483,178	3,062,178	26.1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3. 28.】

【부서명: 기획감사담당관 외 5개 부서】

제목 10	일반회계 이월예산 과다편성 및 부적정 운용	검사위원명	김한교
-------	-------------------------	-------	-----

## [현 황]

○ 이월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이월액 (A)	2017회계연도 이월액 (B)				증감액 (B-A)	2017 예산현액 (C)	비율(%) (B/C)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2017	100,831	107,159 (2,400)	38,354	8,091	60,714 (2,400)	6,328	521,047	20.5	
2016	75,242	100,831 (5,160)	32,598 (4,171)	8,766	59,476 (1,439)	25,589	453,382	22.2	

## [문 제 점]

- 2017 회계연도 사고이월금 8,091백만원은 지난해보다 7.7%(675백만원) 감소되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복지정책과 외 4개 부서에서는 사업기간이 경과된 보훈단체회관 신축 외 6건 5,880백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내역별첨)
- 아울러, 농업정책과에서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비 1,138백만원을 2017년 명시이월 후 원인행위 없이 2018년도 사고이월 시키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 이월사업비는 다음연도 가용예산으로 기능을 못할 뿐 아니라 예산현액의 20%를 상회하여 이월된 예산은 예산의 규모만 키울 뿐 실용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일반회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사업기간이 경과된 사업이 없도록 모든 부서가 적극시행하기 바람,
- 이월예산 요구 및 심사, 의회 의결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제목 10-붙임]

(단위: 백만원)

실과소별	사업명	사업기간	이월액	비고
계	7건		5,880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신축	2015.1.1.~ 2017.12.31	1,233	
문화체육과	야구장조성사업	2010.1.1.~ 2016.12.31	1,124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2010.1.1.~ 2017.12.31	751	
농업정책과	설악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2014.1.1.~ 2017.12.31	1,148	
도시과	상천역세권기반시설확충사업	2008.1.1.~ 2017.12.31	261	
	가평도시계획도로(중1-4호선등) 개설	2013.1.1.~ 2017.12.31	1,267	
평생교육사업소	중앙도서관 건립	2013.1.1.~ 2017.12.31	95	

제 목 10	일반회계 이월예산 과다편성 및 부적정 운용	검사위원명	김한교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이월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월예산 요구 시 부서별 전달회의를 실시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고, 무리한 계약으로 사고이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나,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문제로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운 사업이 발생하였음.</li> <li>○ 아울러, 농업정책과의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는 2017년 명시이월하고 2018년에 2017.12.19.일자로 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훈회관 신축 등 7건의 계속비 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제2항에 따라 이월사업의 승인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연장하였음.</li> <li>○ 향후 일반회계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조정하거나, 부서별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이월예산은 총 88,598백만원(43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96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16%임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음</li> </ul> </li> </ul>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해 계속비 이월되었음.</li> <li>○ 향후, 연도 내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여 사업기간이 경과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음.</li> </ul>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구장조성사업 및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하였으나 향후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li> </ul>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은 수도법 개정으로 사업부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허가에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전액 1,138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나 2018.4.2일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 신청으로 사업비 반납예정임.</li> <li>○ 사업 추진 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여 이월사업의 발생률을 최소화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파악하여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li> </ul>
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천역세권기반시설확충사업은 2018. 12. 21.준공하였고,</li> <li>○ 가평도시계획도로(중1-4호선 등) 개설사업은 2018. 8. 29. 준공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시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하겠음.</li> </ul>
평생교육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절차,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음.</li> </ul>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9.】

【부서명: 기획감사담당관】

제목 11	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액)제고방안 마련	검사위원명	김한교
-------	-----------------------	-------	-----

## [현 황]

- 자료: 붙임

## [문 제 점]

- 가평균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의해 예산편성·운용하는 재정력 지수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임.
-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국·도비 보조금과 달리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가용재원으로 효율적 예산운용이 용이한 재원이기도 함.
- 지난 4년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을 보면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경상세외수입 확충 항목에서 많게는 25억원까지 패널티를 받은 적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기준재정 수요액, 수입액 반영사항 항목에 대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결과]

-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조정율 로 교부액이 결정되며, 수요액 및 수입액 모두 자체노력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여 보통교부세에 대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요액에서는 민간 이전 지방보조금에서 353백만원의 패널티를,
- 기준재정수입액에서는 지방세징수율제고 항목 등 3개 항목에서 7,365백만원의 패널티를 부여받아 총7,718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여기에 조정률(0.9154582)을 곱하면 6,742백만원의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보통교부세의 패널티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적정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 패널티가 많은 세입분야는 세정과장에게 패널티 항목 및 액수를 통보하여 패널티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늘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음.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극대화방안 보고 및 계획수립(2018.10.25./2019.1.15.)
  - 지방보조금 절감 대책 방안 수립 중(2019.3월 중 보고 예정)

[제목 11-붙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액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항 목	2015	2016	2017	2018	비고
계	1,590	1,249	6,217	8,681	
인건비 절감	△328	△1,415	-	87	
지방의회경비	34	15	4	6	
업무추진비	234	157	70	99	
행사축제경비	△2,492	-	1,523	794	
지방보조금절감(민간이전경비)	△60	1,150	△179	△353	
지방청사관리(에너지)	1,531	900	822	975	
지방세징수율 제고	198	△1,353	476	1,816	
지방세체납액 축소	3,093	1,440	2,777	4,338	
경상세외수입 확충	△839	△1,055	△511	△292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84	1,155	1,017	1,211	
탄력세율 적용	300	255	261		
지방세감면액 축소	3				
지방보조금 절감			△43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10.】

【부서명: 기획감사담당관, 행복돌봄과, 세정과, 허가민원과】

제목 12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반영	검사위원명	김한교
-------	---------------	-------	-----

## [현 황]

-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반영 현황

(단위: 천원)

조 직	세입과목	세입예산	실수납액	예산미반영	비고
계				9,560,205	
기획감사실	부동산교부세	6,000,000	6,820,158	820,158	
	시·군 조정교부금	43,734,565	51,164,894	7,430,329	
행복돌봄과	기타사용료	99,015	211,077	112,062	
세 정 과	재산세	21,505,000	21,795,926	290,926	
	지방소득세	13,915,000	14,528,971	613,971	
	그외수입	3,196,509	3,379,807	183,298	
허가민원과	징수교부금수입	595,000	704,461	109,461	

## [문 제 점]

- 2017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기획감사담당관 외 3개 실·과에서는 세입예산 중 1억 이상 총 9,560백만원이 미편성 되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 「지방재정법」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그러므로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징수전망 등을 예측하여 편성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예상수요처에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나, 상당 세입자금이 불용되어 결산이 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하기 바람.
-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재원은 추경을 통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제 목 12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반영	검사위원명	김한교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기획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세입과 관련 있는 각 실과 소와 협의하여 추계 할 수 있는 세입원에 대한 세입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에 미반영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음.</li> <li>- 예산 편성시 각 부서별 회계담당자 실무회의 전달 및 강조 실시 (2회 추가경정:2018.7.23. /3회 추가경정:2018.10.22.)</li> <li>○ 아울러, 주기적으로 세입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입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li> </ul>
행복돌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외수입 프로그램 상 세입예산과목 코드를 착오 운영함에 따라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li> <li>○ 향후, 세입프로그램 운영 및 세입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된 세입원이 정확한 세입과목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음.</li> </ul>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수입은 징수월보나 경기 예측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는데 예산편성 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세입전망을 추계함</li> <li>- 재산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중 1개 법인이 매년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건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해당 법인과 납부시기를 조율하였고 징수월보를 바탕으로 납부전망을 예측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함.</li> <li>-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률, 부동산 거래 신장률 등 변동요인이 많아 세수 예측이 어려우나 관내사업장 및 일자리 창출사업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 철저한 시장조사로 세입추계에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li> <li>○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수입발생이 임의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세입예상이 어려우나 최대한 검토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음.</li> </ul>

허가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통보된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전용보전부담금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으로 본예산에 500,000천원 편성 후, 2017. 3회 추경에 133,000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연말까지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u>예산액</u>: 633,000천원</li> <li>※ 2017.1.1.~2017.12.31.까지 <u>실수납액</u>: 668,000천원</li> </ul> </li> <li>○ 향후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징수된 세입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추가경정을 통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li> </ul>
-------	---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3.】

【부서명: 건설과 외 2개 부서】

제목 13	수익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초과	검사위원명	노광운
-------	--------------------------	-------	-----

## [현 황]

- 자료: 붙임

## [문 제 점]

- 수익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는 1인의 견적서를 징구할 수 있고 그 이상일 때에는 2인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인의 견적을 받는 이유는 상호 비교하여 저가 견적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음인데, 별지 내역은 1인 견적을 받아 처리 후 물량증가를 이유로 증액 처리하여 최종 계약 금액이 규정액을 초과하는 결과 발생

## [개선 및 권고사항]

- 수익계약에 해당되는 사업은 설계당시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 부당하게 과소 설계되지 않도록 할 것.

## [조치(계획)결과] 따로 붙임

[제목 13-붙임]

수의계약 후 금액 변경 내역

(단위: 원)

번호	사 업 명	계약금액	상 호	설계변경일 (1차)	변경금액	지급일시	세항	담당부서	설계변경 사유
1	가평읍 주을길천 외 1개소 수해 복구공사	17,732,000	화이트건설	2017-03-16 (물량증가)	5,768,000	2017-03-31	소하천정비	안전재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구간 맞은편의 호안에 대하여 추가로 정비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여 해당 구간을 설계에 반영함.</li> </ul>
2	청평면 대성3리 구운마을보도 설치공사	17,760,000	(주)샬롬건설	2017-08-09( 물량증가)	10,005,000	2017-08-22	도로정비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내 가로수로 인한 인도폭 확장(인도설치구간 내 가로수로 인하여 휠체어 등 주민통행이 어려워 인도폭 확장 반영</li> <li>도로노면 노후파손으로 인한 일부구간 전면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li> </ul>
3	화악1리 신당 용수로설치공사	18,499,000	(주)일진	2017-05-22( 물량증가)	5,559,000	2017-05-30	정주반확충사업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작 시 현장조사결과 농업용 용수 공급 연장 (L=117.6m)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 추진</li> <li>용수로와 화악천 배수로와 근접되어 퇴수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구조물 설치를 요청(주민)하여 40m를 추가 시공</li> </ul>
4	가평읍 개곡리 (주을길) 도로포장공사	20,101,000	삼영산업	2017-11-17 (물량증가)	2,600,000	2017-12-12	비법정도로공사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기존현황도로(비포장길)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사추진 중 시공사의 실정보고로 우기 시 토사유출 및 침수를 방지하고, 원활한 우수의 흐름을 유지하고자 설계변경</li> <li>집수정 및 연결부 수로 재설치로 도금액 증가됨.</li> </ul>

제 목 13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초과	검사위원명	노광운
--------	--------------------------	-------	-----

조치(계획)결과	
해당부서	조치(계획)결과
건설과	○ 수의계약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철저한 현장 확인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안전재난과	○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인근주민이나 마을이장에게 사업 전에 건의사항에 대해 미리 살펴 사업 중에 설계변경을 통한 규정액이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농업정책과	○ 향후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주변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음.

# 2017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시: 2018. 4. 10.】

【부서명: 환경과】

제목 14	일반회계의 기타회계전출금 집행 소홀	검사위원명	노광운
-------	---------------------	-------	-----

## [현 황]

- 사업의 필요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은 해당연도에 집행하되, 불가피하게 해당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기타회계전출금)해야 할 친환경청정사업(뮤직빌리지 조성사업) 예산액 1,032,000천원 중 267,000천원과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액 2,994,500천원 중 852,000천원 등 총 1,119,000천원을 전출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음.

###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미집행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회계구분	편성목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고
계	2건		4,026,500	2,907,500	1,119,000	
친환경 청정사업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 출 금	1,032,000	765,000	267,000	1 회 추경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994,500	2,142,500	852,000	3 회 추경

## [문 제 점]

- 담당자의 부주의로 해당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에 지장 초래(2018년도 본예산에도 부족예산 미 편성)

## [개선 및 권고사항]

- 친환경 청정사업 및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119,000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조치(계획)결과]

-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필요한 부족사업비는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였음.
- 2017년 친환경 뮤직빌리지 조성사업의 필요한 부족사업비는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였음
- 향후 편성된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사업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